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39호 2026년 6월 11일(목)

경 상 북 도

■ 규 칙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7호)5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3호) 9
-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4호) 13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등 결정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5호) 16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6호) 22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7호) 23

■ 공 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82호) 27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87호) 29
-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93호) 32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95호) 134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05호) 135

시 군

■ 고 시

-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6-110호) 138
-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6-120호) 147
- 영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6-121호) 153
-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6-208호) 159
- 경산 도시관리계획(압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6-105호) 162

■ 공 고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1775호) 204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7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경상북도지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매출액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첨(뒤쪽)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 2.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 법인의 매출액과 자산가액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북도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종합소득금액, 매출액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구분	행정정보명	비고
개인	소득금액증명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영리 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비영리 법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3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지정지 정 내 역 서

시군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성명	사업종류	비고
	읍면	리동	지번								
합계			28필지		5,915,177	4,204					
김천계			4		3,409,090	1,144					
김천	증산	수도	산4	임야	3,382,402	383	금릉군 증산면 평촌리 688	대한불교 조계종청암사	산림유역 관리	대표지번	
김천	증산	수도	산39	구거	26,090	756		국 (국토교통부)	산림유역 관리		
김천	증산	수도	492	전	415	1	경북 김천시 부곡동 1050 현대아파트 102-205	성종기	산림유역 관리		
김천	증산	수도	492-1	전	183	4	경북 김천시 부곡동 1050 현대아파트 102-205	성종기	산림유역 관리		
고령계			5		118,791	307					
고령	쌍림	안화	산19	임야	46,017	106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 106동 503호 (구미호반베르디움엘리트시티)	손성근	사방댐	대표지번	
고령	쌍림	안화	산22-1	임야	39,669	22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125	김종달	사방댐		
고령	쌍림	안화	산86	구거	98	74		국 (국토교통부)	사방댐		
고령	쌍림	안화	262-1	하천	32,663	95		국(환경부)	사방댐		

소재지				지목	진체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사업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주소			
고령	쌍림	안화	198	전	344	10	구미시 황상동 119-3 화진금봉타운 103-1401	손병용	사방램		
칠곡			19		2,387,296	2,753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68,106동208호 (동서장관연립주택)	신동채 외3	산림유역 관리	대표지번	
칠곡	약목	남계	산49-1	임야	136,018	171	칠곡군 약목면 북성동 949	유병문외4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06	답	2,249	5	칠곡군 약목면 북성동 949	평산신씨 모원당종중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14	답	3,613	1	칠곡군 약목면 북성동 1148	신옥성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23	임야	479	15		신옥성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25	전	684	1	칠곡군 약목면 북성리 1039	신복수외3	산림유역 관리	지선1	
칠곡	약목	남계	826	임야	83	35		신옥성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27	답	89	24	칠곡군 약목면 남계동 639	홍수만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28	임야	241	100		신원성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29	전	387	36	대구부 남산동 29	문영모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30	전	79	1		신옥성	산림유역 관리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사업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칠곡	약목	남계	831	답	595	100	칠곡군 약목면 남계동 640	서상석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833	전	1,081	14	경북 칠곡군 약목면 약목로5길 14	조광일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1123	도로	770	39		국 (국토교통부)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1124	도로	519	20		국 (국토교통부)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1125	구거	7,534	1,467		국(농림축산식 품부)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771-2	답	783	6	서울 강박구 미아동 258-87 101호	김상철외1	산림유역 관리	지선2	
칠곡	약목	남계	산43-1	임야	55,145	13		칠곡군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산59	구거	1,455	142		국(농림축산식 품부)	산림유역 관리		
칠곡	약목	남계	산29-1	임야	2,175,492	563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94-1	벽진이씨 완석정파종중	산림유역 관리	지선3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4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및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45,778	-	645,778	100.0	
주거 지역	소 계	579,060	증) 19,886	598,946	92.7	
	제1종일반주거지역	237,450	증) 19,886	257,336	39.8	
	제2종일반주거지역	217,780	-	217,780	33.7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830	-	123,830	19.2	
자연녹지지역		66,718	감) 19,886	46,832	7.3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15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749	100%이상 200%이하	·근린공원 일부 실효 (경산고시제2020-130호)에 따른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86-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137	100%이상 200%이하	·완충녹지 실효(경산고시제2020-138호)에 따른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김유신장군 훈련장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압량읍 압량리	-	29,390	감) 15,325	14,065	경고 제1985-289호 (1985.12.1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김유신장군 훈련장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면적 축소 - A = 29,390 → 14,065㎡ (감 15,325㎡)	·공원실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과 일치화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등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5호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등 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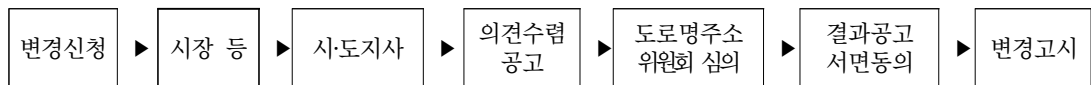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의 부여·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고 시 일 : 2026. 6. 11.

2.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등

가. 대상도로 : ①증산2로, ②김선로, ③상무로, ④송선로, ⑤포아로

나. 변경사유 : 「증산가천터널」 신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연장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의한 도로구간 변경

다. 세부내역 : [붙임] 변경조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또는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054-880-4051 (FAX : 054-880-4059)
- 김 천 시 열린민원과 : 054-420-6674 (FAX : 054-420-6155)
- 구 미 시 토지정보과 : 054-480-6392 (FAX : 054-480-6359)
- 상 주 시 행복민원과 : 054-537-7770 (FAX : 054-480-6149)
- 성 주 군 민 원 과 : 054-930-6818 (FAX : 054-930-6089)

나. 주소 :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토지정보과

다.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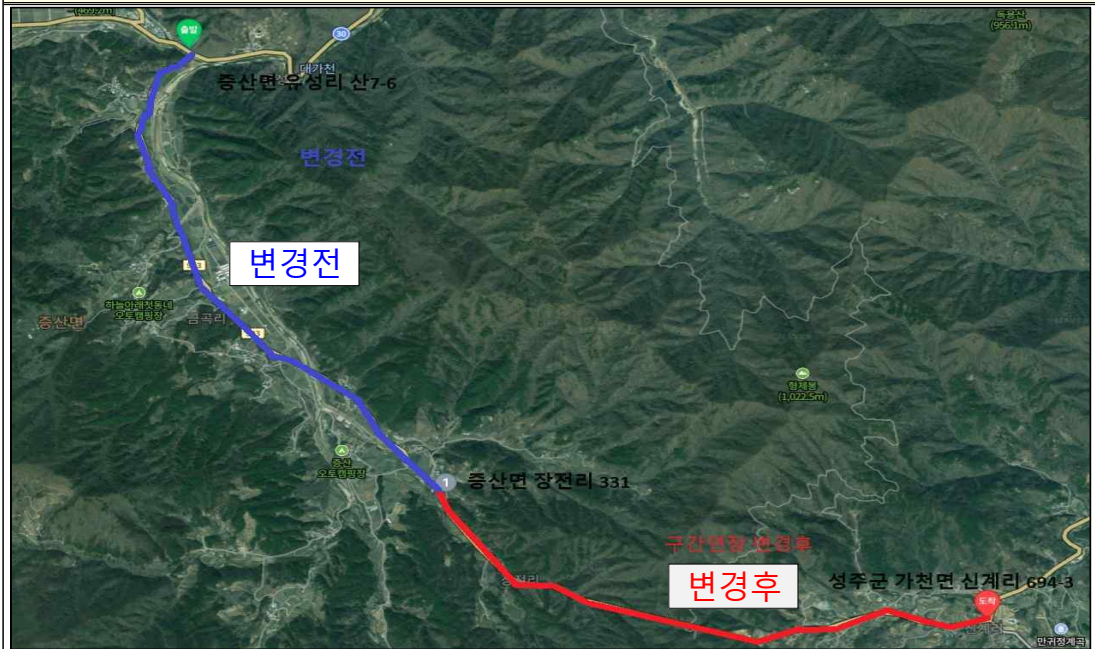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구분	도로 위계	도로명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중심 선	기초 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존	로	증산 2로	김천시 증산면 성주군 가천면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산7-6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331	도면 참조	1→2608	25,920	15	20	증산가천터널신규개설 및 종점 연장
변경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694-3	도면 참조	1→3041	30,380			
기존	로	김선로	김천시 개령면 구미시 선산읍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94-4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48-3	도면 참조	1→1022	15,199	8	20	도로 선형개량 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변경
변경								15,179			
기존	로	상무로	상주시 공성면 구미시 선산읍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591-2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339-1	도면 참조	1→1566	15,613	7	20	도로 선형개량 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변경
변경								15,563			
기존	로	송선로	김천시 아포읍 구미시 원평동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806-1	구미시 원평동 964-51	도면 참조	1→520	5,195	8	20	IC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변경
변경								5,195			
기존	로	포아로	김천시 아포읍 구미시 고아읍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43-11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83-3	도면 참조	1→1096	10,955	8	20	도로 선형개량 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변경
변경								10,955			

2. 현황도

① 증산2로 도로구간 변경 전·후



② 김선로 도로구간 변경 전·후



③ 상무로 도로구간 변경 전·후



④ 송선로 도로구간 변경 전·후



⑤ 포아로 도로구간 변경 전·후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1.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1	지방하천 (백천)	가동보 이설	〈백천4보〉 L=45.0m, H=1.5m (영구 2,043㎡) (일시 780㎡)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747-9 외 6필지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 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12개월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고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에 변경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명성	등연월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1	사단법인 경북생명의숲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새마을로 331-6, 숲마을 사무동	김민정	2000.5.26.	가. 숲 가꾸기, 시민 숲 체험교육 나. 산림환경운동 및 야생동물 보호 다. 산림연구 조사 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대표자변경 (26.5.18.)
2	(사)환경실천연합회 경북본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 3길 109	서상원	2006.7.26.	가. 환경관련 각종 불법행위 감시활동 나.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사업 다. 환경보호 홍보캠페인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26.5.18.)
3	(사)경북시각 장애인연합회 문경지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7길 8, 1층	권미정	2006.12.28.	가. 시각장애인 교육 및 생활훈련 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다.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제도건의 라. 시각장애인의 생활계몽 및 친선과 이해증진을 촉구하기 위한 사업 마. 지역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바.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사. 시각장애인 생활용품 및 보급사업 아.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자. 시각장애인 또는 그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차. 기타 연합회 목적 실현에 필요한 부대사업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목적사업변 경 (26.5.18.)
4	(사)경상북도 장애인권익협회 영천지회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 20, 윤창BH홈타운 상가 110호	나기복	2021.10.27.	가.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 관련 홍보 및 인식 제도 개선사업 나. 장애인 권익호를 위한 장애인권중합민원상담실 운영 다.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증진 및 재활, 자립지원 사업 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소재지변경 (26.5.19.)

연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명성	등연월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5	포항다온장애인 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218, MS빌딩 3층	이정태	2018.10.17.	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상담사업 나. 신체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다. 신체장애인을 위한 나들이사업 라. 신체장애인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및 무료 급식사업 마. 사랑의 끈 연결 운동 등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26.5.20.)
6	경북신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34 1층	임한준	2011.07.08.	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터전 구축사업 나.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운영 다. 신체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등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26.5.21.)
7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경북도지회	경상북도 안동시 도청대로 333	문성모	2000.05.26.	가. 여성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봉사사업 나. 건전소비생활운동 다. 환경보전사업 라. 농도 교류사업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26.5.27.)
8	(사)한국교통장애 인협회 경산시지회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113, 201호(J빌딩)	송화자	2006.03.23.	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계몽, 결연사업 나. 교통문화 함양과 교통안전 생활화 추진사업 다. 교통사고 장애인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 홍보사업 라.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사업 마. 교통사고 유자녀지원 사업 바. 사회의식 개선과 활동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사. 교통사고 휴우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자. 교통장애인 통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차.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교통관련 사업, 증증장애인 생산품 관련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소재지 변경 (26.6.1.)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8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1.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2.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신화종합 건설(주) (최해용)	건축공사업 (10-3582)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203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과태료 (금500,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3. 안내사항

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8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1.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일자 : 2026. 6. 26.(금)

나.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윌트건설 주식회사 (송재득)	건축공사업 (1601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 118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시정명령 실태조사 자료를 2026.7.3.(금)까지 경상북도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주)천호토건 (강병진)	토목공사업 (10-01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59번길 65-1			
주식회사 화랑종합건설 (최진혁)	건축공사업 (16-077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남2길 5, 2층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식회사 태수건설 (남상목)	건축공사업 (01-3959)	경상북도 문경시 돈달로 10, 201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시정명령 실태조사 자료를 2026.7.3.(금)까지 경상북도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주)해성토건 (박동호)	건축공사업 (16-0455)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1길 10, 2층			
경서종합 건설주식회사 (최재관)	건축공사업 (16-0744)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325 부속 7동 106호			
비케이기술 산업주식회사 (김민석)	건축공사업 (16-1024)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48-1, 2층			
주식회사 한빛건설 (이상길)	건축공사업 (06-0553)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972			
주식회사 비엔엘 종합건설 (배민철 이기홍)	건축공사업 (16-074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399-7, 2층			
디에이치 건설(주) (김광현)	토목건축 공사업 (12-007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20			
임하종합 건설주식회사 (임호영)	토목공사업 (16-0818) 건축공사업 (16-071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토요일길 14, 2층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KISCON) 및 경상북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기한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에 이의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193호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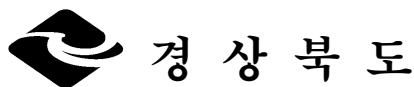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출안건 】

1.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교육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6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4조의 2)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제혁신추진단-2185(2026. 4. 9.)

나. 법제심사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5269(2026. 4. 7.)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여성가족과-4215(2026. 4. 7.)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

2) 예고방법 : 도보 게재

3)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별도 조치 필요없음 §예산담당관-4966(2026. 4. 7.)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3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관련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미래전략기획단 지방행정주사보 유지민 (054-880-4508)



경 상 북 도



수신 미래전략기획단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미래전략기획단-2149(2026. 4. 6.)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해당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 추계에 필요한 금액,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우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전경 2026. 4. 7. 지인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4966 (2026. 4. 7.) 접수 미래전략기획단-2183 (2026.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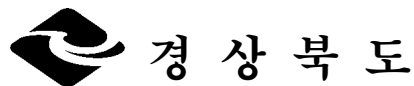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korea.kr / 비공개(5)

"아이들 행복이 많 희망이 많 미래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307
번 호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조정하고,
 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정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7,970명 → 7,971명(증 1명) (안 제2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6명 → 2,295명(감 1명)
 -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변동없음)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9명 → 161명(증 2명)
 -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변동없음)
 - 5)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변동없음)

나.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정무직 공무원 : 3명(변동없음)
- 2) 일반직 공무원 : 2,182명 → 2,183명(증 1명)
 - 1급 : 1명 → 0명(△1)
 - 2급 : 2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6명 → 15명(△1)
 - 3~4급 : 3명(변동없음)
 - 4급 : 103명 → 104명(+1)
 - 5급 이하 : 2,039명 → 2,041명(+2)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없음)
- 3)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없음)
- 4) 연구직 공무원 : 245명(변동없음)
- 5) 지도직 공무원 : 31명(변동없음)
- 6) 소방직 공무원 : 5,489명(변동없음)
- 7) 경찰직 공무원 : 4명(변동없음)

다. 정원 변동내역

- 1) 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조정 : +2명
 - 일반직 : 5급 이하 +2명
-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에 따른 조정 : △1명
 - 일반직 : 1급 △1명, 3급 △1명, 4급 +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경제혁신추진단) : 규제심사 대상 아님

§경제혁신추진단-3031(2026. 5. 20.)호

나.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7504(2026. 5. 19.)호

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5620(2026. 5. 19.)호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6. 5. 21. ~ 5. 26.(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058호)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예산담당관-6914(2026. 5. 20.)호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70명”을 “7,9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6명”을 “2,29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59명”을 “16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지 역 본 부	사 업 소	합 의 제 행 정 기 관	경 제 자 유 구 역 청
합 계		7,971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183	-						
	1급	0							0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5	12		1	2			0
	3~4급	3	2	1					
	4급	104	70	10	4	10	8	1	1
	5급 이하	2,041	-						
	전문경력관	16	-						
별 정 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 구 직	소 계	245	-						
	연구관	47			46		1		
	연구사	198	-						
지 도 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 방 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 찰 직	소 계	4	4						
	경 감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970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296명</u></p> <p>2. (생 략)</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59명</u></p> <p>4. 5.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7,971명</u>-----.</p> <p>1. ----- <u>2,295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 <u>161명</u></p> <p>4.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합 계		7,970	-																	
정무직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82	-																	
	1급	1							1	1급		0								0
	2급	2	1				1			2급	2	1				1				
	2~3급	2	1	1						2~3급	2	1	1							
	3급	16	12		1	2				3급	15	12		1	2					0
	3~4급	3	2	1						3~4급	3	2	1							
	4급	103	70	10	4	10	8	1	0	4급	104	70	10	4	10	8	1	1		
	5급 이하	2,089	-																	
	전문경력관	16	-																	
	소 계	16	-																	
별정직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소 계	245	-																	
연구직	연구관	47			46		1			연구관	47			46		1				
	연구사	198	-																	
	소 계	31	-																	
지도직	지도관	10			10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 계	5,489	-																	
소방직	소방정	31	7		24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소 계	4	4							소 계	4	4								
경찰직	경 감	4	4							경 감	4	4								

관련법령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2호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항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이 증가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1)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71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70	7,971	+1	
집행기관의 정원	2,296	2,295	△1	
소방공무원	5,489	5,489	0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9	161	+2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	22	0	
경찰공무원	4	4	0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다.

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6년 1억3백만원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총 5년간 5억4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6 ~ 2029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 계	541,685	103,054	105,630	108,271	110,978	113,752
일 반 직	541,685	103,054	105,630	108,271	110,978	113,752

*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103,054천원), 연도별 보수인상률 2.5%를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103,054	105,630	108,271	110,978	113,752	541,685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103,054	105,630	108,271	110,978	113,752	541,685

5. 부대의견

가. 2026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일반직 : 103,054천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률은 2.5%를 산정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 성 자

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송영례 (054-880-2123)

"نال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정책기획관-5663(2026. 5.1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의회 정책지원관 1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명 정원 증원에 따라 5년간 5.4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요비용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 보수 인상을 2.5%를 반영하여 추계된 바 추계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전결 2026. 5. 20.
 협조자 예산담당관-6914 (2026. 5. 20.) 접수 정책기획관-5755 (2026. 5. 2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아이多 행복이多 희망이多 미래多"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 상 북 도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호	1308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출이유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경제 회복 등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계	15,318,255,000	100.00%	14,036,348,000	100.00%	1,281,907,000	9.13%
일반회계	13,590,321,000	88.72%	12,359,558,000	88.05%	1,230,763,000	9.96%
특별회계	1,727,934,000	11.28%	1,676,790,000	11.95%	51,144,000	3.05%
기타특별회계	1,727,934,000	11.28%	1,676,790,000	11.95%	51,144,000	3.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57,646,000	5.60%	829,334,000	5.91%	28,312,000	3.41%
치수사업특별회계	5,760,000	0.04%	5,760,000	0.04%	-	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71,000	0.02%	3,771,000	0.03%	-	0.00%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5,046,000	0.62%	97,141,000	0.69%	△2,095,000	△2.1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276,000	0.21%	32,276,000	0.23%	-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7,100,000	0.05%	6,000,000	0.04%	1,100,000	18.33%
소방특별회계	726,335,000	4.74%	702,508,000	5.01%	23,827,000	3.39%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318,255,000	100.00%	14,036,348,000	100.00%	1,281,907,000	9.13%
10 지방세수입	3,001,000,000	19.59%	3,001,000,000	21.38%	-	0.00%
110 지방세	3,001,000,000	19.59%	3,001,000,000	21.38%	-	0.00%
20 세외수입	240,226,851	1.57%	166,713,015	1.19%	73,513,836	44.1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006,512	0.20%	29,851,359	0.21%	155,153	0.52%
220 임시적세외수입	175,342,431	1.14%	101,998,040	0.73%	73,344,391	71.91%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34,477,070	0.23%	34,462,778	0.25%	14,292	0.04%
240 지난해도 수입	400,838	0.00%	400,838	0.00%	-	0.00%
30 지방교부세 등	2,117,468,457	13.83%	2,012,328,814	14.34%	105,139,643	5.22%
310 지방교부세	2,090,626,113	13.65%	1,985,486,470	14.15%	105,139,643	5.30%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26,842,344	0.18%	26,842,344	0.19%	-	0.00%
50 보조금	8,411,604,480	54.91%	7,741,512,151	55.15%	670,092,329	8.66%
510 국고보조금등	8,411,604,480	54.91%	7,741,512,151	55.15%	670,092,329	8.66%
60 지방채	339,250,000	2.21%	100,000,000	0.71%	239,250,000	239.25%
610 국내차입금	339,250,000	2.21%	100,000,000	0.71%	239,250,000	239.25%
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8,705,212	7.89%	1,014,794,020	7.23%	193,911,192	19.11%
710 보전수입등	193,006,379	1.26%	108,180,558	0.77%	84,825,821	78.41%
720 내부거래	1,015,698,833	6.63%	906,613,462	6.46%	109,085,371	12.03%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318,255,000	100.00 %	14,036,348,000	100.00 %	1,281,907,000	9.13 %
010 일반공공행정	1,470,189,428	9.60 %	901,816,749	6.42 %	568,372,679	63.03 %
020 공공질서및안전	1,026,597,587	6.70 %	1,004,683,062	7.16 %	21,914,525	2.18 %
050 교육	758,988,910	4.95 %	622,243,731	4.43 %	136,745,179	21.98 %
060 문화및관광	534,502,926	3.49 %	496,663,235	3.54 %	37,839,691	7.62 %
070 환경	1,155,867,193	7.55 %	1,100,820,299	7.84 %	55,046,894	5.00 %
080 사회복지	5,603,751,639	36.58 %	5,541,776,137	39.48 %	61,975,502	1.12 %
090 보건	286,484,615	1.87 %	276,610,546	1.97 %	9,874,069	3.57 %
100 농림해양수산	1,746,804,886	11.40 %	1,612,458,161	11.49 %	134,346,725	8.33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6,479,065	3.50 %	401,152,410	2.86 %	135,326,655	33.73 %
120 교통및물류	481,806,360	3.15 %	419,727,995	2.99 %	62,078,365	14.79 %
140 국토및지역개발	695,596,283	4.54 %	655,800,036	4.67 %	39,796,247	6.07 %
150 과학기술	61,895,608	0.40 %	55,472,408	0.40 %	6,423,200	11.58 %
160 예비비	50,000,000	0.33 %	63,933,776	0.46 %	△13,933,776	△21.79 %
900 기타	909,290,500	5.94 %	883,189,455	6.29 %	26,101,045	2.96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기금명	2026년도 운용계획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남북교류협력기금	251,823	251,823	251,824	251,824	△1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3,993,112	113,993,112	112,113,112	112,113,112	1,880,000	1,880,000
관광진흥기금	23,903,379	23,903,379	19,905,800	19,905,800	3,997,579	3,997,579

3. 예 산 안 : 별첨

4.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 안 번호	1309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6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규모

대상기관	사업건수	출자·출연 예정규모	비고
1개 기관	2개 사업	2,250,000천원	

나. 출자출연시기 : 2026년

3. 사업내용 : 붙임

4. 관련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2,250,000	
1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	2,000,000	
2		경북테크노파크	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조성	250,000	

1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출연 예 정 액	2,000,000천원('25년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경북테크노파크* ○ 대 표 : 하 인 성 (* 세부 현황 별첨①)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사 업 내 용					
출자·출연 필 요 성	○ 모태펀드 및 경북도, 대구시 공동 조성으로 모펀드 1,270억원을 조성하고, 이에 자펀드를 최소 2,000억원 이상 결성 및 투자 ○ AI 및 초격차 딥테크 기업 등 지역 미래산업 유망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성이 인정되는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후속 투자 고려				
사 업 개 요	○ 사업 세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 드 명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 결성기간 : 2026년~2038년(모펀드 존속기간 12년) • 결성규모 : 1,27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50, 대구시 78, 모태펀드 750, 구미시 10, 김천시 5, IM뱅크 170, 기업은행 100, 농협은행 30, 이수페타시스 30, 디지스트 20, 화신 10, 한국DSG 10, 한국남부발전 5, 경북대 2 •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 • 투자대상 :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및 초격차 딥테크 기업 등 지역 미래산업 유망 기업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2.)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 신청 • ('26.3.)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 최종 선정 • ('26.5.) 중앙 투자심사 신청 				
출자출연 근거·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검 토 의 견	○ 대경권 미래산업 유망 벤처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소 관 부 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부서장 곽은희	담당사무관 이유정	담당자 안주홍	전화 2680

2 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조성

출자·출연 예정액	250,000천원('25년 -천원)				
출자·출연 기관	○ 기관명 : 경북테크노파크* ○ 대표 : 하인성 (*세부 현황 별첨①)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 초기 우수 창업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성이 인정되는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후속 투자 ○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경북 5대 첨단산업분야 지역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 필요				
사업개요	○ 사업 세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명 : 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1호 펀드 • 결성기간 : 2026년~2036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6년) • 결성규모 : 5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10, 한국모태펀드 20, 구미시 10, 경산시 10, 씨엠티엑스 1,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 파트너스라운지 1 • 운용사 :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 투자대상 : 도내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 등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2.) 경북도 출자 참여 계획 • ('26.2.)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 신청 • ('26.4.)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 최종 선정 • ('26.5.) 도 투자심사 신청 				
출자출연 근거·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검토의견	○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 도내 우수 및 유망기술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자금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소관부서	경제통상국	부서장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화
	기업지원과	곽은희	이유정	안주홍	2680

별첨1 (재)경북테크노파크 현황

소재지 (38542)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법」 32조 	대표전화	일반 : 053-819-3000	설립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FAX : 053-819-3019		
			URL : www.gbtp.or.kr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08. 27.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2004. 11. 14.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연구지원기관 부분 국무총리상 2009. 04. 30. 경상북도 연구기관 업무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5. 10. 29. 기업지원부문 최우수 T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6. 03. 02. 통합법인 출범(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2016. 01.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16. 10. 20. 기업지원부문 최우수 T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19. 07. 23.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 08. 27.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S등급) 달성 2021. 03. 22.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22. 08. 30. 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선정 2023. 08. 08.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4년 연속 우수특구 선정 2024. 04. 30. 의성 세로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선정(전국 최대 5개 지정) 2024. 09. 02. 통합 경북테크노파크 출범(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24. 11. 07.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4년 연속) 2025. 07. 0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2025. 09. 19. 지방 공공기관 발전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기관형태	출연기관
----	---	------	------

인원현황 (26.6.1.)	구분	계	직원								비정규직		
			경영진		일반정규직								
			인원	직속단장	소계	일반	연구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기간제
정원	271	1	4	266			266				-	-	-
현원	243	1	2	240	-	240	-	-	-	-	25	24	1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이사장	이철우	현) 경상북도지사				054-880-2001
		최외출	현) 영남대학교 총장				053-810-2000
	이사 (당연직)	권순재	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044-204-7576
		정기환	현)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053-659-2264
		김영신	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044-300-0812
		박시균	현)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054-880-2500
		조현일	현) 경산시시장				053-810-5007
		최기문	현) 영천시시장				054-330-6772
		정현태	현) 경일대학교 총장				053-600-4042
		성한기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053-850-3001
		박순진	현) 대구대학교 총장				053-850-5006
		변창훈	현)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053-819-1001
	하인성	현)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053-819-3011	
	이사 (선임직)	서성수	현)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회장				053-721-6910
윤주영		현)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회장				053-601-5203	

주요기능

- 경북형 미래전략산업 정책기획 선도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 기반 지역기업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경영 혁신체계 고도화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자본금(백만원)	설립		100						
재무상태(백만원) (2025년 말 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220,775	87,290	133,485	29,463	22,838	6,625	191,312	191,312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 상 북 도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 안 번호	1310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6 회계연도 경상북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기관	사업건수	위탁·대행 예정규모	비고
1개 기관	1개 사업	500,000천원	

3. 사업내용 : 붙임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제1항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수탁·대행 공공기관명	사 업 명	위탁·대행 기간	위탁·대행 예 정 액	비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	500,000	
1	경제통상국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K-AI 경북형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사업	2026.07.01. ~ 2026.12.31. (6개월)	500,000	기 업 지원과

1 K-AI 경북형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사업

위탁·대행 예 정 액	500,000천원('25년 -천원)				
수탁·대행 공 공 기 관	○ 기 관 명 :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대 표 : 박 성 수 (* 세부 현황 참고①)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사 업 내 용					
위탁·대행 필 요 성	○ 시활용,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필요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AI 활용 확산 및 경북 10대 전략 산업 대전환과 연계한 앵커·협력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 ○ 위탁·대행기간 : 2026.7월 ~2026.12월(6개월) ○ 사업비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시스템 솔루션 도입 : 420,000천원(21,000천원 × 20개 기업) • 운영비(일반수용비, 선정·평가회의 등) : 50,000천원 • 위탁·대행 수수료 : 30,000천원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투자비용 등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통한 스마트 공장(AI+로봇) 구축 지원 • 상생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기술 공유 등 동반성장 제조혁신 모델 구축 				
위탁·대행 근 거 법 령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검 토 의 견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규정에 따라 적정으로 심의·의결된 사업임 (* 세부 현황 참고②) ○ 산·학·연·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문기관으로써 지역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용이하여 수탁·대행 기관으로서 적절함				
소 관 부 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부서장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화
		곽은희	허정훈	박광섭	2672

참고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현황

소재지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54-472-2986							설립주체	경상북도								
			FAX : 054-472-2989																
			URL : www.gepa.kr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 11.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법인 설립 2004. 01.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관리 운영 2010. 05. 경북일자리종합센터 개소 2010. 07.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2017. 05.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개소 2019. 12.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개소 																		
인원현황 ('26. 5월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개	사무	연구	별정	기능	기타	소개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타	소개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66	1	64	56		3	5	1		1			-	-	-
현원	60	1	59	50		3	5	1		1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이사장	양금희	경제부지사								054-880-2020								
	부이사장 (당연직)	박성수	현)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054-472-2986								
	이사 (당연직)	이재훈	현)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054-880-2673								
	"	정기환	현)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053-659-2266								
	이사 (선임직)	김상영	현)떡배기식품 대표								053-853-8487								
	"	배선봉	현)산동금속공업(주) 대표								054-977-2250								
	"	김영민	현)법무법인 반석 변호사								010-4812-5060								
	"	김경미	현)수성 F.L 대표								054-443-5161								
	"	김명량	현)지구환경측정(주) 대표								054-274-1260								
	"	김영형	현)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								010-5201-2309								
	"	김종호	현)신우패앤씨 대표								054-920-8881								
비상임감사 (선임직)	박준훈	현)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감사								054-470-8513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운전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애로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 종합상담실 운영, 교육, 컨설팅 등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일자리 발굴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자본금(백만원) (2025년말 기준)	설립	2,500 (15,431)																	
재무상태(백만원) (2025년말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29,944	19,300	10,644	14,800	12,099	2,701	15,144	15,431	(287)										

참고2**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심의결과 : 적정

검토내용

검토 사항		검토 의견(도 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에 따른 추가 인력 필요로 행정조직의 비대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북 주력 산업 및 AI 기반 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및 안정성 유지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대내외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 가능
④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도내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기업주도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지원 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대내외 인프라 활용 가능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지원 과제를 통한 결과물 도출 및 이를 통한 정량적 성과(매출액 등)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감증을 통한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 경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기관으로 금융, 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지원이 가능하며, 기술혁신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 지원에 용이함

관련법령발취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R&D), 디자인 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
2. 제품홍보, 시장개척, 신기술 습득 및 활용, 기업경영개선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경영 연수사업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1311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2026.08.31.)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제3조의2)

- 1) (현행) 2026년 8월 31일까지 → (개정) 2031년 8월 31일까지

나.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제21조 제2항 제2호)

- 1) (현행) 법인등기부등본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해당 없음(경제혁신추진단-2157, 2026.4.9.)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5270, 2026.4.7.)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여성가족과-4311, 2026.4.13.)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6. 4. 27. ~ 5. 17.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별도 조치 필요없음(예산담당관-5228, 2026.4.13.)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사.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재정계획심의위원회('26.4.20.~4.23.)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6년 8월 31일”을 “2031년 8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8월 31일----- . ----- ----- -----.
제21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1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법령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2026.8.31.)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지방행정주사 정성용 (054-880-2679)

"날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 기업지원과-2911(2026. 4. 6.)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31년 8월 31일로 연장하고,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등을 위한 사항으로 ▶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 추계에 필요한 금액,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답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전결 2026. 4. 13. 자전매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228 (2026. 4. 13.) 접수 기업지원과-3118 (2026.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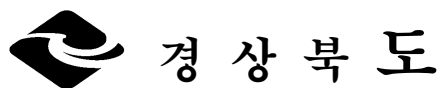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아이들 행복이 많 희망이 많 미래다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12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가. 도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사전·사후 점검,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인력과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함.
- 나.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 확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명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

○ 필요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환경개선 관련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신규 위탁운영 필요
- 시범운영결과('25.6.1.~'26.5.31.)는 종합상담 835건, 실태·합동점검 431회 6,809건, 인식 개선 및 연구조사 12회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붙임 1)

다. 위탁사무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사전·사후점검)
- 동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지원, 활용)
- 기술지원(자문) 및 정보제공(시군,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주)
-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 매뉴얼 개발 등

라. 위탁기간 : 2026. 06. ~ 2029. 05.(36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

- 인건비 : 책임·선임기술요원 등
-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용품, 출장비 등

- 사업비 :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교육, 매뉴얼 개발, 홍보 등

사.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 적정

- 검토결과 : (붙임 2)

3. 향후계획

가. 2026. 6월 :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나. 2026. 7월 : 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다. 2026. 8월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4. 관련법령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7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나.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5조

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10조

붙임1**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성과**

- 종합상담(설계·설치 컨설팅, 민원 대응, 설계도서 검토, 기술 상담)

구 분	기술상담		기술지원		비 고
종합상담	유선	대면	도면검토	사후점검	
	234	95	425	81	

- 실태조사(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연석 경사로 등 합동점검)

구 분	부적합(현장)	개선요청	개선완료	비 고
실태점검	5,734	2,838	455	
합동점검	1,075	1,075	805	

- 인식개선(전문교육, 사례 연구, 홍보 부스 운영 등)

구 분	횟수	대상/활동	배부(교안/홍보물)	비 고
교 육	3회	193명	300부	
홍 보	9회	65건	6,761개	

- 주요성과

- 실태조사 결과 행정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마련
 - 실태조사 부적합 사항 각 시군에 실시간 공유 및 시정조치 통보
- 구미형 무장애 업무 시스템에 기술지원센터 협의 기관 지정
 -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위원회 기술심의 및 자문 기관 지정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 기반 마련
 - 저상버스 정류소, 여객터미널 실태 점검, 제도개선 도출 등 개선계획 마련
- 시군, 기술지원센터, 코레일 등 합동점검을 통한 기관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민원 신속 처리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시설 이해 증진 및 필요성 인식 전환 등 대
 - 이용자 中心 설계를 통한 급변하는 행정 수요 대응력 제

붙임2**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정책기획관-2494호, 2026.2.26.)****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개 요**

- 근거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8조 제2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 2. 23.(월) ~ 2. 25.(수)
- 심의위원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등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심의대상 : 1건(재위탁)

안건(호)	부 서	심 의 안 건	비 고
2026-1	교통정책과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건	재위탁

- 심의내용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기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등
- 심의가부

유 형	소속 및 직위	성 명	심 의 가 부
			26-1호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김 호 진	가
	정책기획관	안 성 렬	가
	복지건강국장	김 호 섭	가
	예산담당관	지 진 태	가
	여성가족과장	이 중 헌	가
위촉직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양	가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박용임	가
	영진대학교 겸임교수	이원열	가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안혜림	가
	법무법인 이황 변호사	이예빈	가
	前)예천군 부군수	김준호	가

 심의결과 : 적정

붙임3**관련 법령(발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3.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4.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의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사무대상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 상 북 도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1313
번 호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

①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사업 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사업부지 취득방식이 토지매입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현물배당으로 변경되어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토지매입비 전액 감액 등

나. 사업기간 : 2023. 5.[기본계획 수립] ~ 2028. 12.[사회복지회관 등 준공]

다. 위 치 :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공공업무용지 38-4, 5) * 보훈회관 맞은편

라. 사업규모 : <대지> 11,855㎡, <건축연면적> 5,800㎡

마. 변경내역

- (당초) 사업비 35,400백만원(토지 8,180, 건물 27,220)
- (변경) 사업비 32,700백만원(토지 0, 건물 32,700)

변경내역	당초	변경	비고
○ 경상북도개발공사 현물배당에 따른 토지 취득으로 토지매입비 감액	82억원	-	82억원 감
○ 공사·설계비 및 감리비 등 증액(36억원) - 건립공사 기획용역 대비 공사 및 설계비 단가보정·물가상승률 반영 등 ○ 시설개선 공사비 반영(19억원) - 필로티 주차장(40대) 설치 공사에 따른 공사비 등 증액	272억원	327억원	55억원 증

바. 총사업비 : 32,700백만원(도비/일반회계) ※ 소유지분 : 도 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비 고
당초	35,400	9,200	13,100	13,100	0	
변경	32,700	0	1,500	50	31,15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당초) (백만원)	금액(변경) (백만원)
계			35,400	32,700
공 사 비	회 관	5,500㎡ × 3,806천원 = 20,933,000천원	21,261	23,300
	창 고	300㎡ × 2,227천원 = 668,100천원		
	옥외주차장(필로티)	1,400㎡ × 1,214천원 = 1,699,600천원		
용 역 비	설계비	1식 × 1,500,000천원	1,030	1,500
	감리 용역비	1식 × 4,500,000천원	1,777	4,500
기 타	시설부대비 등	1식 × 500,000천원	756	500
	예비비	1식 × 2,900,000천원	2,396	2,900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11,855㎡	8,180	0

사. 취득재산 : 건물 1동(연면적 5,800㎡) ※ 부지 11,855㎡(현물배당)

아. 주요시설 :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노인회관 사무실, 대강당, 교육장 등

건물별	층별	면적(㎡) (당초)	면적(㎡) (변경)	주요시설	비 고
계		5,800	5,800		
사회복지회관 · 노인회관	지상3층	1,112	2,961	사회복지 사무실, 교육장, 대회의실, 공용창고 등	
	지상2층	1,942	1,338	사회복지 사무실, 노인회관 사무실, 계단식 도서관 등	
	지상1층	2,446	1,501	대강당, 공용시설(기계실, 전기실 등) 등	
	별관	300	0	-	

자. 계약방법 : 현물배당(토지), 일반경쟁입찰(건물)

차. 기대효과

- 도내 복지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회관 및 초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노인회관의 효율적 통합 공간 조성으로 복지서비스 시너지 제고

카.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사유

- 도비 100% 투자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비대상

타. 관련절차 이행여부

구 분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	완료 (‘24. 2. 27.)	비대상	완료 (‘26. 4. 9..)	반영 (‘23. 10.)
세부내용	조건부 승인*	-	원안의결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사업

*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구체적인 시설 운영 계획 마련,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시설별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하여 추진

□ 공유재산의 교환

① 구미소방서 부지 교환

가. 목 적 :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주 불일치 해소,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업무 수행의 안정성 확보

나. 사업기간 : '25. 12. ~ '26. 12.

다. 위 치

- 취득재산 : 구미시 공단동 209-1, 206(구미소방서 부지)
- 처분재산 : 구미시 진평동 985-35, 1035(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라. 총사업비 : 12백만원(도비/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07년 이후	비고
도 비	12	0	0	12	0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계			12
기 타	-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식 × 12,000,000원	12

마. 취득 및 처분재산

구분	항목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천원)	이용현황	지목	비 고
취득	토지	구미시 공단동 209-1	8,098	6,667,083	구미소방서 본서	대	시유지
		구미시 공단동 206	297	271,398			
처분	토지	구미시 진평동 985-35	1,157	2,862,418	인동119안전센터 진미동행정복지센터	대	도유지
		구미시 진평동 1035	2,308	5,709,992			

바. 교환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26. 3.가감정평가 실시)

(단위: 천원)

구 분	도유지	시유지	차 액
가 감정평가액	10,349,955	10,348,220	1,735

※ 감정평가 차액 : 현금정산

사. 기대효과

- 부지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일치를 도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자산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아. 관련절차 이행여부

구 분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	비대상	비대상	완료 ('26. 4. 9.)	반영 ('25. 10.)
세부내용	-	-	원안의결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사업

□ 공유재산의 취득

① 영주소방서 부석119안전센터 건립

가. 목 적 : 부석면 일대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안전사고 및 응급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거점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다. 위 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489-4 외 6필지

라. 총사업비 : 3,917백만원(도비/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도 비	3,917	0	0	271	3,646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백만원)
계			3,917
설 계	- 설계비	1식 × 271,000천원	414
	- 감리비	1식 × 143,000천원	
공 사	- 건축	1식 × 2,314,000천원	3,490
	- 기계, 전기	1식 × 684,000천원	
	- 통신, 기타	1식 × 492,000천원	
기 타	- 시설부대비 등	1식 × 13,000천원	13

마. 취득재산 : 건물 1동(건축연면적 957㎡)

바. 주요시설 : 119안전센터 1동

건물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957		
119안전센터	지상 1층	550	차고, 사무실, 대기실, 화장실 등	
	지상 2층	407	휴게실, 식당, 심신안정실 등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아. 기대효과

- 영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소방력 한계를 극복, 북부권 재난 발생 시 신속 출동 및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
- 산림 인접(소백산맥) 지역의 마을과 문화재, 산림자원을 보호
- 소방 사각지대 주민의 안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층 응급환자 인명피해 저감, 이에 따른 안전 인프라 구축

자. 관련절차 이행여부

구 분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	비대상	비대상	완료 (’26. 4. 9.)	반영 (’25. 10.)
세부내용	-	-	원안의결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사업

② 고령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가. 목 적 : 신규 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재난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다. 위 치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708-1 외 3필지

라. 총사업비 : 3,917백만원(도비/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도 비	3,917	0	0	271	3,646	

○ 세부예산 내역

구 분	공 정	산 출 기 초	금 액(백만원)
계			3,917
설 계	- 설계비	1식 × 271,000천원	414
	- 감리비	1식 × 143,000천원	
공 사	- 건축	1식 × 2,314,000천원	3,490
	- 기계, 전기	1식 × 684,000천원	
	- 통신, 기타	1식 × 492,000천원	
기 타	- 시설부대비 등	1식 × 13,000천원	13

마. 취득재산 : 건물 1동(건축연면적 957㎡)

바. 주요시설 : 119안전센터 1동

건물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957		
119안전센터	지상 1층	550	차고, 사무실, 대기실, 화장실 등	
	지상 2층	407	휴게실, 식당, 심신안정실 등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아. 기대효과

-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 대응력 강화로 화재진압체계 구축
- 고품질 전문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소방서비스 질 향상

자. 관련절차 이행여부

구 분	도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여부	비대상	비대상	완료 (’26. 4. 9.)	반영 (’25. 10.)
세부내용	-	-	원안의결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사업

3.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구 분		수 량	면 적	금 액(백만원)	비 고	
취 득	계	부지	2	8,395㎡	6,938	
		건물	3	7,714㎡	40,534	
		기타				
	1. 매 입 (신 축)	부지				
		건물	3	7,714㎡	40,534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2	8,395㎡	6,938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부지	2	3,465㎡	8,572	
		건물				
		기타				
	4. 매 각	부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부지	2	3,465㎡	8,572	
		건물				
		기타				
	3. 기타처분	부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구분	재산표시			추정 가격 (백만원)	취득시기 (계약방법)	취득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				
1	건물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대	5,800	32,700	'28년 (일반경쟁)	-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등 건립(1동)	사회복지과
2	토지	구미시 공단동 206, 209-1	8,395	6,938	'26년 (교환)	구미소방서 부지 취득	구미소방서
3	건물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489-4 일대	957	3,917	'29년 (제한경쟁)	- 영주소방서 부석119안전 센터 건립(1동)	영주소방서
4	건물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708-1 일대	957	3,917	'29년 (제한경쟁)	- 고령소방서 성산119안전 센터 건립(1동)	고령소방서

○ 처분대상 재산목록

구분	재산표시			추정 가격 (백만원)	처분시기 (계약방법)	처분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				
1	토지	구미시 진평동 985-35, 1035	3,465	8,572	'26년 (교환)	- 구미시 진미동행정복지센터 부지 교환 처분	구미소방서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14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가.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심층 상담, 법률·의료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임.
- 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을 통한 빠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운영체계가 필요함.
- 다. 이에,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지역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다. 필 요 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심층 상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유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라. 위탁사무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자 의료·법률 연계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불법촬영물등의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마. 위탁기간 : 2027. 1월 ~ 2029. 12월(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매년 성평등가족부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국고보조율 50%)
- 2026년 예산내역 : 139,370천원(국비 69,685, 도비 69,685)

구분	지원단가(천원)	예산(천원)
계		139,370
인건비	38,390 * 3명	115,170
운영비	7,200	7,200
사업비	17,000	17,000

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결과 : 붙임

※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서면) : 적정【정책기획관-5944(2026.5.28.)】

3. 향후계획

가. 2026. 9월 : 위수탁 공모(공개모집)

나. 2026.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다. 2026. 1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라. 2027. 1월 : 위탁 운영

4. 관련법령 : 붙임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검토 사항		검토 의견(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운영 시 공무원 증원, 조직개편 등 확보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절차로 인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전담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에서 외부자원 연계 활용이 보다 용이하며 전문적임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보다 관련 분야(사회복지·피해상담 등) 학식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활용이 효율적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분기별 실적보고 및 사업완료 후 정산·실적보고서를 통해 성과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고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분기별 실적 점검 및 사업완료 후 정산·실적보고서 등으로 사업운영에 대한 확인·관리 * 연1회 현장점검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현재 대구, 울산, 충남, 경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라 '27년부터 전국 시도 위탁 추진 ※ 서울, 부산, 경기, 인천 : 공공위탁

관련법령발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독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 2.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 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15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2개소의 시설 활성화 제고 및 운영실적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유연한 인력운용이 가능하고 시장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 경상북도는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에 기여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2개소(안동호반, 팔공산금화)를 조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실적은 매년 감소추세
-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운영 수입의 증가·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차별화를 시도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도립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징수
-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 도립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타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업무 등

나. 위탁시설 개요

구분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위치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6 일원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산49-11 일원	
면적 (시설규모)	59ha (25동 연면적 6,920㎡)	31ha (19개동 연면적 2,948㎡)	
조성사업비	339억원(국비 172, 도비 167)	142억원(국비 71, 도비71)	
조성기간	2005년~2018년 ※ 최초개장 2010년	2011년~2018년 ※ 최초개장 2015년	
주요 시설	숙박시설	16동 29실(258명 수용)	8동 25실·카라반 6량(216명 수용), 야영장 17면
	체험시설	치유관, 체험학습관	-
	회의실	산림교육관	산림문화교육관
	부대시설	다목적구장, 족구장, 어린이공원 등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비고	자연휴양림 지정고시(2003. 9. 9.)	자연휴양림 지정고시(2010. 5. 3.)	

다.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마. 소요예산 : 금964백만원 정도(도비 100)

-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연도별	수입금(백만원)	지출금(백만원)	손실액(백만원)
평균	1,249,080	2,213,682	964,603
2023년	1,298,656	2,182,383	883,727
2024년	1,321,739	2,221,664	899,925
2025년	1,126,844	2,237,000	1,110,156

- 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에 직접 사용
-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공동배분

바.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적정 ※ 정책기획관-5944(2026. 5. 28.)호
- 심의기간 : 2026. 5. 26.(화) ~ 5. 27.(수)
- 심의내용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4. 관련법령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다.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

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

관련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위탁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이동·변경·증설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16
------------	------

제출일자 : 2026. 06. 0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의 전시홍보관, 창업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기능 조기 정착과 활성화 및 공공성·효율성을 확보
-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부과 및 입주이용 질서 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센터 운영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주요 기능(안 제1조 ~ 제3조)
- 나. 전시홍보관 운영(안 제4조 ~ 제6조)
- 다. 부대시설 운영(안 제7조)
- 라. 창업임대사무실 운영(안 제8조 ~ 제10조)
- 마. 사용허가 취소, 양도금지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조례안 제8조 내용은 규제의 신설에 해당

-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기간에 공포 및 공포결과 의견없음

나. 법제심사 : 검토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6. 3. 19. ~ 4. 8.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사.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선행절차 필요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관광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광어 연구, 관련 산업의 육성·홍보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전시홍보관”이란 관광어 및 관련 산업을 전시·홍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창업임대사무실”이란 관광어 산업 관련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사무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전시홍보관 내 카페, 휴게실 등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상어 산업 연구·교육 등 사업 추진
2. 전시·홍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관상어 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입주시설 운영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전시홍보관 운영) ① 전시홍보관은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전시홍보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 이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③ 전시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④ 도지사는 관상어 산업의 대중적 인식 제고 및 산업홍보를 위하여 상설 전시, 기획전시, 체험·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참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전시물의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람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3.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실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관람객의 준수사항)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2. 음주,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4. 동·식물 및 전시생물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7조(부대시설의 활용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격) 창업임대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상어 및 관련 산업의 예비창업자
2. 관상어 및 관련 산업에서 창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상어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 ①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상어 산업과의 연관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0조(창업임대사무실 운영)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도지사는 부대시설 및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시정 요구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입주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등) 센터 내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

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경상북도 관광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관광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어산업 관련 행정지원
2. 관광어 사육 및 품종개발 관련 연구

3. 관상어산업 창업지원 시설 운영

4. 관상어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

5. 관상어산업 홍보 시설 운영

②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조례안은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재정수반을 요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안 내용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지방해양수산주사 김동우(054-880-8911)

"날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원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
한 조례안)

- 1.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1208(2026. 3. 6.)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안	검토의견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 제정안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서명생략

주우관 **류대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전경** 2026. 3. 11. **지진배**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551 (2026. 3. 12.) 접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2026. 3. 12.)
-1359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동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korea.kr / 비공개(5)

"아이들 행복이 많 희망이 많 미래도"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9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 대수-25 호
2. 등 록 일 : 2021. 6. 30.
3. 등록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4. 업 체 명 : (주)에스비씨글로벌
5. 대 표 자 : 최 원 기
6. 소 재 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680
7. 취소일(사유) : 2026. 6. 8. (자진반납)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0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6. 11.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덕송개발 (이정숙)	건축공사업 (16-0575)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9, 2층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S&CConstructio nCo., Ltd) (백원수)	건축공사업 (16-07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75, 402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7. 8.(수) 14:00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부속 회의실)

나.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청 지역개발과 박상영

다.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라. 구비서류

-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4)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

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고 시

영주시 고시 제2026-110호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일원 영주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1.

영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결정)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흥공원	근린공원	영주시 가흥동 산45-7	104,412	-	104,412	건설부 고시 제487호 (1986.10.23)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				구성비(%)	건축바닥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104,412	-	104,412	100.00	4,298		
시 설 종 류	소 계	39,003	증)970	39,973	38.11	4,298		
	도로 및 광 장	24개 노선, 중심광장, 회차공간	7,898	증)944	8,842	8.30	-	
	조경시설	조경식수대, 빛의정원, 들꽃동산	9,023	-	9,023	8.64	-	
	휴양시설	숲휴식터, 전망쉼터	237	증)26	263	0.26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숲건강터	170	-	170	0.16	-	
	교양시설	도서관, 영주예술관 (공연장, 문화원 갤러리), 대기오염측정소	13,577	-	13,577	13.00	3,470	
	편익시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전망타워, 전망대	7,930	-	7,930	7.59	720	
	공원관리 시 설	관리사무소	168	-	168	0.16	108	
녹 지		65,409	감)970	64,439	61.89	-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 구	설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조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	104,412	4,298	7,338			
변		경			104,412	4,298	7,338			
1.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7,898	-	-			
변경	소		계		8,842	-	-			
기정	-	도	로	전 지역	6,507	-	-			
변경	-	도	로	전 지역	7,451	-	-			
기정	1-1	중심광장	가흥동 385-1		1,287	-	-			
기정	1-2	회차공간	가흥동 산45-31		104	-	-			
2.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9,023	-	-			
변경	소		계		9,023	-	-			
기정	2-1	조경식수대	가흥동 산45-7		698	-	-			
기정	2-2	빛의정원	가흥동 산45-7		1,483	-	-			
기정	2-3	들꽃동산	가흥동 산45-7		1,763	-	-			
기정	2-4	들꽃동산	가흥동 산45-7		5,079	-	-			
3.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237	-	-		

시 구 설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조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소	계	-	263	-	-			
기정	3-1	숲휴식터	가흥동 산45-45	20	-	-			
기정	3-2	숲휴식터	가흥동 산45-7	91	-	-			
기정	3-3	전망쉼터	가흥동 산45-7	63	-	-			
기정	3-4	전망쉼터	가흥동 산45-7	63	-	-			
신설	3-5	전망쉼터	가흥동 산45-7	26	-	-			
4.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	0	-	-			
변경	소	계	-	0	-	-			
5.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	170	-	-			
변경	소	계	-	170	-	-			
기정	5-1	숲건강터	가흥동 산45-44	170	-	-			
6. 교양 시설									
기정	소	계	-	13,577	3,470	5,090			
변경	소	계	-	13,577	3,470	5,090			
기정	6-1	도서관	가흥동 산45-7	1,847	700	1,340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기정	6-2	영주예술관	가흥동 385-4	11,646	2,750	3,730	SRCRC 조	지상 1~2층	공연장 문화원 갤러리 참고
기정	6-3	대기오염측 정소	가흥동 산45-7	84	20	20	컨테이너	지상1층	

시 구	설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조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7. 편의 시설										
기정	소 계				7,930	720	2,140			
변경	소 계				7,930	720	2,140			
기정	7-1	주 차 장	가흥동 385-1		2,815	-	-			
기정	7-2	주 차 장	가흥동 385-4		1,970	-	-			
기정	7-3	주 차 장	가흥동 산45-7		1,314	-	-			
기정	7-4	휴게음식점	가흥동 385-1		364	250	260	RC조/철골조	지상2층	
기정	7-5	전망타워	가흥동 산45-7		840	470	1,880		지상4층	
기정	7-5	전망타워	가흥동 산45-7		1,015	470	1,880		지상4층	
기정	7-6	전 망 대	가흥동 산45-7		452	-	-			
8. 공원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168	108	108			
변경	소 계		-		168	108	108			
기정	8-1	관리사무소	가흥동 산40-4		168	108	108	컨테이너	지상1층	
9. 기 타										
기정	소 계		-		65,409	-	-			
변경	소 계		-		64,439	-	-			
기정	-	녹 지	-		65,409	-	-			
변경	-	녹 지	-		64,439	-	-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사유
-	-	도 로	•면적변경 A=6,507㎡→7,451㎡ 증)944㎡	•무장애테크로드 조성에 따른 노선변경
기정	3-4	전망쉼터	•위치변경	•전망쉼터 조성에 따른 위치변경
신설	3-5	전망쉼터	•신설 A=26㎡ 증)26㎡	•전망쉼터 조성에 따른 신설
-	-	녹 지	•면적변경 A=65,409㎡→64,439㎡ 감)970㎡	•공원 도로 및 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계		20개 노선		2,352	6,507	-	-	-	
변경	합계		24개 노선		2,656	7,451	-	-	-	
기정	중로	2	1	15	19	285	진입도로	중심광장 1-1 (가흥동 385-1)	영주예술관 (가흥동 385-4)	
기정	소로	3	1	7	93	651	진입도로	동측구역계 (가흥동 385-1)	중심광장 1-1 (가흥동 385-1)	
기정	소로	3	2	6	18	132	진입도로	동측구역계 (가흥동 385-3)	소로 3-1 (가흥동 385-1)	
기정	소로	3	3	4	74	296	시설접근로	중심광장 1-1 (가흥동 385-1)	도서관 6-1 (가흥동 385-1)	
기정	소로	3	4	4	131	524	시설접근로	중심광장 1-1 (가흥동 385-1)	전망광장 1-3 (가흥동 산45-7)	
기정	소로	3	5	4	133	532	시설접근로	전망광장 1-3 (가흥동 산45-7)	중심광장 1-1 (가흥동 385-1)	
기정	소로	3	6	4	135	540	시설접근로	서측구역계 (가흥동 산45-42)	가흥배수지 (가흥동 산45-45)	
기정	소로	3	7	2.5	98	245	시설접근로	동측구역계 (가흥동 385-1)	휴게음식점 7-3 (가흥동 385-1)	
기정	세로	-	1	2	536	1,072	산책로	북측구역계 (가흥동 산45-7)	전망광장 1-3 (가흥동 산45-7)	
변경	세로	-	1	2	743	1,486	산책로	전망쉼터 3-3 (가흥동 산45-7)	전망쉼터 3-4 (가흥동 산45-7)	무장애 테크로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세로	-	2	2	140	280	산책로	전망쉼터 3-3 (가흥동 산45-7)	숲휴식터 3-3 (가흥동 산45-7)	
변경	세로	-	2	2	86	172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7)	전망대 7-6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3	2	10	20	산책로	소로 3-4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변경	세로	-	3	2	6	12	산책로	소로 3-4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4	2	64	128	산책로	북측구역계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변경	세로	-	4	1	44	44	산책로	북측구역계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5	2	54	108	산책로	동측 구역계 (가흥동 산45-30)	전망쉼터 3-3 (가흥동 산45-7)	무장애 데크로드
변경	세로	-	5	2	82	164	산책로	동측 구역계 (가흥동 산45-30)	전망쉼터 3-3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6	2	55	110	산책로	남측구역계 (가흥동 산45-7)	전망대 7-4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7	2	188	376	산책로	동측구역계 (가흥동 산45-30)	남측구역계 (가흥동 산41-3)	
변경	세로	-	7	2	104	208	산책로	전망쉼터 3-4 (가흥동 산45-7)	남측구역계 (가흥동 산41-3)	
기정	세로	-	8	2	60	120	산책로	남측구역계 (가흥동 산41-3)	세로 7 (가흥동 산41-3)	
기정	세로	-	9	2	108	216	산책로	전망광장 1-3 (가흥동 산45-7)	전망대 7-4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10	2	26	52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31)	세로6 (가흥동 산45-7)	
기정	세로	-	11	2	68	136	산책로	전망대 7-4 (가흥동 산45-7)	남측구역계 (가흥동 산45-45)	
기정	세로	-	12	2	130	260	산책로	소로3-5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무장애 데크로드
변경	세로	-	12	2	130	260	산책로	소로3-5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무장애 데크로드
신설	세로	-	13	2	136	408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7)	전망쉼터 (가흥동 산45-7)	
신설	세로	-	14	3	41	123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7)	세로1 (가흥동 산45-7)	
신설	세로	-	15	2.5	100	250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7)	주차장7-3 (가흥동 산45-7)	
신설	세로	-	16	3	140	420	산책로	세로1 (가흥동 산45-7)	북측구역계 (가흥동 산45-12)	

바.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세로 1-2 외 11개 노선	-	노선변경 증)944㎡	•무장애데크로드 및 산책로 조성따른 노선변경

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4.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공원관리과(054-639-643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 칭 : 가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 104,412㎡

실시계획인가 면적 : 3,450㎡

□시설개요

구분	실시계획 인가면적(m ²)	비고
합계	3,450	
도로 및 광장	3,4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휴천2동), 영주시청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총면적 : 3필지 3,450m²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사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시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계					53,862	3,450		
1	영주시	가흥동	산45-7	임	52,999	3,240	영주시	영주시
2	"	"	산45-12	임	863	150	영주시	영주시
3	"	"	산45-3	임	1,785	60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고시 제2026-120호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영 주 시 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규모 변경 및 시설면적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담1	영주담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 용혈리 1037 일원	96,419	감)40	96,37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 6. 1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영주담 하류공원	운동시설(4)	◦ 감 40㎡ A= 8,646㎡ → 8,606㎡(감 40㎡)	◦ 기존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상 운동시설 면적 오기 정정
”	휴양시설(3-2)	◦ 건축 규모(바닥면적 및 연면적 변경) A= 92㎡ → 86㎡(감 6㎡)	◦ 노후 카라반 교체에 따른 건축 규모 변경
”	휴양시설(3-3)	◦ 건축 규모(바닥면적 및 연면적 변경) A= 250㎡ → 227㎡(감 23㎡)	◦ 노후 카라반 교체에 따른 건축 규모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				건축바닥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96,419	감)40	96,379	100.0	1,165	감)29	1,136		
공원 시설	소 계	74,310	감)40	74,270	77.1	1,165	감)29	1,136	
	도로 및 광장	15,634	-	15,634	16.2	-	-	-	
	조 경 시 설	5,492	-	5,492	5.7	-	-	-	
	휴 양 시 설	33,512	-	33,512	34.8	492	감)29	463	
	운 동 시 설	8,646	감)40	8,606	8.9	-	-	-	
	편 의 시 설	3,229	-	3,229	3.4	398	-	398	
	관 리 시 설	7,797	-	7,797	8.1	275	-	275	
녹 지	22,109	-	22,109	22.9	-	-	-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96,419	1,165	1,165	
변 경				96,379	1,136	1,136	
1. 도로 및 광장							
기 정			소계	15,634	-	-	
기정	-	도 로	전 지 역	15,431	-	-	
기정	1-1	진입광장	용혈리 992번지 일원	203	-	-	
2. 조경시설							
기 정			소계	5,492	-	-	
변 경			소계	5,492	-	-	
기정	2-1	피크닉장	용혈리 1008-9번지 일원	2,250	-	-	
기정	2-2	야외무대	용혈리 1031번지 일원	1,027	-	-	
기정	2-3	전통정자	용혈리 1031번지 일원	687	-	-	
기정	2-4	초화정원	용혈리 1042번지 일원	1,528	-	-	
3. 휴양시설							
기 정			소계	33,512	492	492	
변 경			소계	33,512	463	463	
기정	3-1	오토캠핑장	용혈리 1076번지 일원	10,458	-	-	
기정	3-2	오토캠핑장	용혈리 1063-4번지 일원	1,944	92	92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3-2	오토캠핑장	용혈리 1063-4번지 일원	1,944	86	86	
기정	3-3	오토캠핑장	용혈리 1049번지 일원	2,827	250	250	
변경	3-3	오토캠핑장	용혈리 1049번지 일원	2,827	227	227	
기정	3-4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6번지 일원	2,262	150	150	
기정	3-5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423	-	-	
기정	3-6	오토캠핑장	용혈리 1008-1번지 일원	9,416	-	-	
기정	3-7	오토캠핑장	용혈리 1007-2번지 일원	1,188	-	-	
기정	3-8	오토캠핑장	용혈리 1070-3번지 일원	2,994	-	-	
4. 운동시설							
기 정			소계	8,646	-	-	
변 경			소계	8,606	-	-	
기정	4-1	축구장	용혈리 1037번지 일원	2,005	-	-	
기정	4-2	농구장	용혈리 1034-2번지 일원	5,216	-	-	
기정	4-3	체력단련장	용혈리 1008-3번지 일원	530	-	-	
기정	4-4	체력단련장	용혈리 1070-1번지 일원	855	-	-	
5. 편익시설							
기 정			소계	3,229	398	398	
기정	5-1	주차장	용혈리 1007-1번지 일원	2,025	-	-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5-2	공동취사장	용혈리 1008-10번지 일원	238	100	100	
기정	5-3	화장실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16	20	20	
기정	5-4	공동취사장	용혈리 1074번지 일원	370	100	100	
기정	5-5	공용화장실	용혈리 1070-2번지 일원	380	178	178	
6. 관리시설							
기 정			소 계	7,797	275	275	
변 경			소 계	7,797	275	275	
기정	6-1	관리동	용혈리 1034-1번지 일원	6,216	275	275	
기정	6-2	분리수거장	용혈리 1070-1번지 일원	215	-	-	
기정	6-3	오수처리장	용혈리 1008-14번지 일원	246	-	-	
기정	6-4	오수처리장	용혈리 1046번지 일원	1,120	-	-	
7. 기 타							
기정			소 계	22,109			
기정	-	녹 지	공 원 전 역	22,109	-	-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3-2	오토캠핑장	◦ 건축 규모(바닥면적 및 연면적 변경) A= 92㎡ → 86㎡(감 6㎡)	◦ 노후 카라반 교체에 따른 건축 규모 변경
변경	3-3	오토캠핑장	◦ 건축 규모(바닥면적 및 연면적 변경) A= 250㎡ → 227㎡(감 23㎡)	◦ 노후 카라반 교체에 따른 건축 규모 변경
변경	4(소계)	운동시설	◦ 감 40㎡ A= 8,646㎡ → 8,606㎡(감 40㎡)	◦ 기존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상 운동시설 면적 오기 정정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는 영주시 영주호개발과 시설관리팀(054-639-4844)에 비치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주시 고시 제2026-121호

영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주시 휴천동 61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1.

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주시 휴천동 612-3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 휴천동 612-2 일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영주 도시계획시설(중로 1-5호선, 중로2-29호선) 조성사업

3. 사업규모 (변경없음)

- 중로1-5호선 : L=150m, B=20~26m (698㎡)

- 중로2-29호선 : L=145m, B=15m (2,2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 그룹 강남사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인가일로부터 2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계				2,923	2,923								
1	영주시 후천동	537-8	도	232	232	영주시							
2	영주시 후천동	537-10	학	111	11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영주시 후천동	537-9	학	92	9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영주시 후천동	601-5	도	42	42	영주시							
5	영주시 후천동	612-3	학	128	12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6	영주시 후천동	601-10	도	254	254	영주시							
7	영주시 후천동	599-3	도	8	8	영주시							
8	영주시 후천동	599-5	학	59	5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9	영주시 후천동	541-1	도	273	273	영주시							
10	영주시 후천동	599-4	전	139	139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11	영주시 휴천동	600-7	전	144	14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12	영주시 휴천동	650-18	도	89	89	국(건설부)				
13	영주시 휴천동	580-25	도	425	425	영주시				
14	영주시 휴천동	580-26	전	4	4	영주시				
15	영주시 휴천동	580-28	전	8	8	영주시				
16	영주시 휴천동	580-33	도	5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7	영주시 휴천동	580-32	대	88	8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8	영주시 휴천동	582-2	전	82	8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9	영주시 휴천동	650-14	대	24	2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20	영주시 휴천동	650-10	도	17	17	국(건설부)				
21	영주시 휴천동	650-13	도	1	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2	영주시 후천동	583	전	121	121	영주시							
23	영주시 후천동	584-5	전	61	6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24	영주시 후천동	584-6	전	69	69	영주시							
25	영주시 후천동	584-3	전	77	77								
26	영주시 후천동	588-8	도	6	6	김옥남		경상북도 영주시 기흥동 1381-228					
27	영주시 후천동	588-6	대	29	29	김옥남		경상북도 영주시 기흥동 1381-228					
28	영주시 후천동	588-7	대	138	13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29	영주시 후천동	587-4	전	18	18	영주시							
30	영주시 후천동	589-1	중	15	1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1	영주시 후천동	587-2	전	83	83	영주시							
32	영주시 후천동	590-1	학	20	2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여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영주시 휴천동	650-17	도	17	17	국(건설부)					
34	영주시조 암동	1275-6	묘	16	1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5	영주시조 암동	1273-7	도	27	27	영주시					
36	영주시조 암동	1274-4	전	1	1	영주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위 도시계획시설은 준공검사를 마친 때 관리청인 영주시에 귀속됨

8. 변경사유 :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변경

9.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54-639-6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고시 제2026-20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22-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6. 11.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화북배수지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 22-11번지 일원	1,015	증) 8	1,023	-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①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 22-11번지 일원	• 화북배수지 면적 변경 - A=1,015㎡ → 1,023㎡ 증) 8㎡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 2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화북배수지

-면적(A)=1,023㎡ , 용량(V)=300㎥(150㎥, 2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상주시장 (상수도사업소장)

2)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년 12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4.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9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주소	성명	
1	화북면 상오리	산20	임	3,169,042	383		국 (산림청)				
2	화북면 상오리	산22-3	도	19,334	524		국 (기획재정부)				
3	화북면 상오리	산22-11	도	2,640	116		국 (국토해양부)				
계						1,023					

경산시 고시 제2026-105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압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압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	-	645,778	감) 1,102.6	644,675.4	-	
변경	압1	압량지구	압량읍 압량리, 부적리, 신대리 일원	645,778	감) 1,102.6	644,675.4	경고 제2013-574호 (2013.12.3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압1	압량읍 압량리, 부적리, 신대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 A = 645,778 → 644,675.4㎡ (감 1,102.6㎡)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일부구간 실효에 따른 구역 정비 및 주택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미반영 사항 반영

※ 대로1-2호선 실효에 따른 구역제척 : 감 1,092㎡

주택사업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감 10.6㎡

· 경고2022-89호 : 증) 271.0㎡ (A03-01, 증 259㎡ / 어린이공원100, 증 12㎡)

· 경고2024-50호 : 감) 281.6㎡ (A03-02, 감 281.6㎡)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계획 (변경 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45,778	감) 1,102.6	644,675.4	100.0	
주거지 역	소계	598,946	감) 10.6	598,935.4	92.9	
	제1종일반주거지역	257,336	감) 7,706.0	249,630.0	38.7	
	제2종일반주거지역	217,780	증) 1,468.4	219,248.4	3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830	증) 6,227.0	130,057.0	20.2	
자연녹지지역		46,832	감) 1,092.0	45,740.0	7.1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50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	1,092	-	·구역제척으로 인한 구역 내 용도지역 제척
2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807-10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0.6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확정 측량결과를 반영
3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62-5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79	100%이상 250%이하	·대로1-2호선 실효 후 중로1-압11호선 재결정에 따른 정비
4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169-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6,227	100%이상 300%이하	·대로1-2호선 실효 후 중로1-압11호선 재결정 및 중로2-압10호선 실효에 따른 정비

나. 용도지구 계획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김유신장군 훈련장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압량읍 압량리	-	14,065	-	14,065	2000.1.10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45,778.0	감) 1,102.6	644,675.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90,423.4	증) 46,143	436,566.4	67.7		
	단독주택	110,525.0	증) 18,656	129,181.0	20.1		
	블럭형단독주택	32,752.0	증) 6,112	38,864.0	6.0		
	중층공동주택	76,070.0	증) 2,010	78,080.0	12.1		
	고층공동주택	171,076.4	증) 19,365	190,441.4	29.5		
근린생활시설		26,414.0	증) 3,920	30,334.0	4.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28,930.0	감) 51,155	177,775.0	27.6		
	도	일반도로	124,301.0	감) 30,457	93,844.0	14.5	
		보행자전용도로	4,415.0	증) 1,490	5,905.0	0.9	
		주차장	3,920.0	증) 371	4,291.0	0.7	
		공원	35,459.0	감) 9,623	25,836.0	4.0	
		녹지	22,513.0	감) 12,927	9,586.0	1.5	
		학교	33,240.0	감) 7	33,233.0	5.2	
		유수지	5,082.0	감) 2	5,080.0	0.8	

※ 22, 24년 주택사업*시 고층공동주택용지 변경면적이 토지이용계획 구역계 면적에 반영되지않아 금회정리(-10.6㎡)

* 주택사업에 따른 구역계 미 반영사항 반영 (감 1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271.0㎡ (A03-01, 증 259㎡ / 어린이공원100, 증 12㎡, 경고2022-89호)

· 확정측량 결과 반영, 감) 281.6㎡ (A03-02, 감 281.6㎡, 경고2024-50호)

나. 교통시설

1) 도 로 (변경 있음)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기정	계	37	5,205	56,141	9	1,759	23,573	23	2,652	23,707	5	794	8,861
변경		39	12,914 (8,109)	99,749	13	4,357	70,394	20	2,530	22,506	6	6,027 (1,222)	6,849
기정	광 로	-	-	-	-	-	-	-	-	-	-	-	
변경		1	5,455 (650)	2,704	-	-	-	-	-	-	1	5,455 (650)	2,704
기정	중 로	7	1,571	24,898	2	590	11,897	2	306	4,937	3	675	8,064
변경		9	2,989	57,616	6	2,477	50,748	2	306	4,506	1	206	2,362
기정	소 로	30	3,634	31,243	7	1,169	11,676	21	2,346	18,770	2	119	797
변경		29	4,470	39,429	7	1,880	19,646	18	2,224	18,000	4	366	1,783

주) 구역 내 연장 및 면적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광 로	1개 노선			5,455 (650)	-	-	-	-	-	()안은 구역내
신설	3	1	40~ 50	5,455 (650)	중산동구역계	금구리 369-12	일반도로	-	국교부 제2019-979호 (20-01-06)	실시계획 인가반영
중 로	9개 노선			2,989	-	-	-	-	-	()안은 구역내
신설	1	암6	20	203	광로3-1 (부적리 108-78)	중로1-암10 (부적리 159-3)	일반도로	-	-	노선신설
신설	1	암8	20	209	중로1-암12 (암량리 122-5)	중로1-암10 (암량리 236-6)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기정	1	암9	20	307	중로1-암2 (부적리 221)	부적리 159	일반도로	-	경산고시제41호 (21-03-15)	
기정	1	암10	20	283	부적리159	암량리236-1	일반도로	-	경산고시제55호 (22-04-18)	
신설	1	암11	20~ 23	636	중로1-암12 (암량리 50)	부적리 66	일반도로	-	-	노선신설
신설	1	암12	20	839	중로1-암11 (암량리 50)	신대리 170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2	암11	15	집산 도로	49	중로1-암2 (부적리 245) 부적리 194	일반 도로	-	경산고시제41호 (21-03-15)	
기정	중로	2	암12	15	집산 도로	257	부적리 204 암량리 240-3	일반 도로	-	경산고시제55호 (22-04-18)	
기정	중로	3	암8	12	국지 도로	206	광로3-1 (부적리 207-1) 중로1-암1 (부적리 180-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소로			29개 노선		-	4,470	-	-	-	-	()안원 구역내
기정	소로	1	암36	10	국지 도로	93	대로1-2 (부적리 63) 소로1-암2 (부적리 8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1	암40	10	국지 도로	69	소로1-암2 (부적리 81-2) 소로1-암2 (부적리 79)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1	암36	10	국지 도로	173	중로1-암11 (부적리 63) 소로2-암55 (부적리 79)	일반 도로	-	"	소로1- 암40 합병
기정	소로	1	암37	10	국지 도로	197	광로3-1 (부적리 86-3) 중로1-암1 (부적리 119)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1	암37	10	국지 도로	360	광로3-1 (부적리 86-3) 중로1-암11 (부적리 705)	일반도로	-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암38	10	국지 도로	214	중로1-암량2 (부적리 156-8) 중로3-암4 (부적리 180-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1	암39	10	국지 도로	307	중로1-암2 (신대리 239-1) 중로1-암4 (암량리 24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구분	구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1	압41	200	중로1-압2 (부적리 119)	소로1-압2 (부적리 112)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중로	3	압6	255	중로1-압1 (부적리 126-1)	중로2-압2 (암량리 149)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1	압42	89	중로1-압1 (부적리 151)	소로1-압6 (부적리 119)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1	압42	101	소로2-압33 (암량리 335)	소로1-압41 (부적리 119)	일반 도로	-	"	중로3-압6 합병
기정	중로	3	압7	214	중로1-압1 (암량리 126)	중로2-압2 (암량리 149)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1	압44	525	중로1-압12 (암량리 126)	소로1-압37 (암량리 175)	일반 도로	-	"	노선연장및 폭원축소등
기정	소로	2	압30	139	대로1-2 (부적리 62-4)	중로2-압1 (부적리 55-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0	188	중로1-압11 (부적리 62-4)	부적리 55-5	일반 도로	-	"	노선연장및 폭원축소
폐지	소로	2	압31	44	중로2-압1 (부적리 59)	소로2-압1 (암량리 62-4)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폐지	소로	2	압32	118	중로3-압1 (암량리 151-4)	중로3-압2 (암량리 182-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압33	52	중로3-압2 (부적리 129)	소로2-압5 (암량리 186-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3	54	소로1-압42 (암량리 335)	소로2-압34 (암량리 188-2)	일반 도로	-	"	노선연장및 각각전제 변경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압34	8	252	중로1-암1 (부적리 165-3)	중로2-암2 (암랑리 222)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4	8	219	중로1-암10 (부적리 159-2)	중로2-암37 (암랑리 225)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기정	소로	2	압35	8	56	중로1-암3 (부적리 167-3)	소로2-암5 (부적리 167-3)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5	8	56	중로1-암3 (부적리 167-3)	소로2-암5 (부적리 167-3)	일반 도로	-	"	각각전제 변경
기정	소로	2	압36	8	62	중로1-암3 (암랑리 193)	소로2-암5 (암랑리 203)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압37	8	144	중로1-암4 (암랑리 234)	중로2-암2 (암랑리 182-8)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7	8	114	중로1-암8 (암랑리 234)	중로2-암34 (암랑리 225-1)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기정	소로	2	압38	8	103	소로2-암8 (암랑리 261)	소로2-암10 (암랑리 127-4)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8	8	103	소로2-암37 (암랑리 261)	소로2-암39 (암랑리 127-4)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각각전제 변경
기정	소로	2	압39	8	184	중로1-암4 (암랑리 245)	중로3-암3 (암랑리 127-4)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39	8	186	중로1-암8 (암랑리 245)	소로1-암44 (암랑리 127-4)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노선연장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2	암40	국지 도로	194	중로3-암3 (암량리 127-11)	소로2-암10 (암량리 28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암40	국지 도로	197	소로1-암44 (암량리 127-11)	소로2-암39 (암량리 28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암41	국지 도로	113	중로2-암2 (암량리 243)	소로1-암4 (신대리 18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암42	국지 도로	113	중로2-암2 (신대리 182)	소로1-암4 (신대리 178-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암43	국지 도로	119	중로2-암2 (신대리 200)	소로1-암4 (신대리 229-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암44	국지 도로	116	중로2-암2 (신대리 237)	소로1-암4 (신대리 234-1)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암45	국지 도로	85	중로1-암1 (신대리 178-5)	소로1-암4 (신대리 178-5)	일반 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폐지	소로	2	암46	특수 도로	10	대로1-2 (암량리 169)	암량리 169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2	암47	특수 도로	103	광로3-1 (부적리 65-4)	대로1-2 (부적리 65-4)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암47	특수 도로	113	광로3-1 (부적리 65-4)	중로1-암11 (부적리 65-4)	보행자 전용도로	-	"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암48	특수 도로	145	대로1-2 (암량리 169-1)	중로3-암1 (암량리 153-2)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압48	8	193	중로1-압11 (압량리 169-1)	소로1-압44 (압량리 155-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형변경및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압49	8	102	광로3-1 (부적리 200)	소로1-압3 (부적리 198)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변경	소로	2	압49	8	101	광로3-1 (부적리 200)	소로1-압3 (부적리 198)	보행자 전용도로	-	"	노선축소
기정	소로	2	압50	8	92	중로1-압1 (부적리 198)	소로1-압3 (부적리 198)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3	압58	6	37	소로2-압1 (부적리 62-4)	소로2-압18 (부적리 65-4)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기정	소로	3	압59	7	82	중로1-압2 (부적리 180-10)	중로3-압4 (부적리 180-10)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574호 (13-12-30)	
신설	소로	3	압61	4	243	압량리 178-3	소로1-압37 (압량리 177)	보행자 전용도로	-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압62	4	4	소로1-압42 (압량리 355)	압량리 355	보행자 전용도로	-		노선신설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광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반영 B = 40~50m L = 5,455(6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로3-1호선 실시계획인가(경산시고시제2017-130호)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어 금회 노선 반영
-	중로1-암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B = 20m, L = 20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암6호선 일몰제로 실효되었으나, 연결체계 정비하기 위해 재결정
-	중로1-암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B = 20m, L = 20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암8호선 일몰제로 실효되었으나, 연결체계 정비하기 위해 재결정
-	중로1-암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B = 20 ~ 23m, L = 63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1-2호선의 실효로 인한 간선교통축 형성 및 대입공공택지와 연계할 위해 폭원 축소하여 재결정
-	중로1-암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B = 20m, L = 83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암1호선 중 미집행된 구간이 실효되었으나, 연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재결정
소로1-암36	소로1-암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1-암36, 1-암40호선 노선 합병 및 연장 B = 10m L = 93 → 173m (증 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1-암2호선 실효에 따른 연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노선 합병 및 연장
소로1-암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B = 10 L = 197 → 360m (증 16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연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황도로 반영하여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중로3-암6	소로1-암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3-암6호선, 소로1-암42 노선 합병 B = 10m L = 89 → 101m (증 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연결체계를 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일부 구간 정비를 통한 노선 합병
소로1-암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연장 및 폭원 축소, 선형 변경, 노선명 변경 B = 12 → 10m (감 2m) L = 214 → 525m (증 31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연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선형변경, 노선 연장 및 폭원 축소로 인한 노선명 변경
중로3-암7	소로1-암44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암30	소로2-암30	· 노선 연장 및 폭원 축소 B = 8 → 7.5 ~ 8m (감 0 ~ 0.5m) L = 139 → 188m (증 49m)	· 종로1-암11호선 재결정에 따른 연결체계 정비 및 막다른 도로 회차 조성을 위해 노선 연장
소로2-암31	-	· 노선 폐지 B = 8m, L = 44m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막다른 도로의 토지이용 효율성 및 개별 필지 접근체계 등을 감안하여 폐지
소로2-암32	-	· 노선 폐지 B = 8m, L = 118m	· 소로1-암44호선 노선정비 및 주차장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암33	소로2-암33	· 노선 연장 및 가각전제 변경 B = 8m L = 52 → 54m (증 2m)	· 소로1-암42호선 및 소로2-암34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가각전제 변경
소로2-암34	소로2-암34	· 노선 축소 B = 8m L = 252 → 219m (감 33m)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불부합하는 연결체계 정비를 위한 노선 축소
소로2-암35	소로2-암35	· 가각전제 변경 B = 8m L = 56m	· 소로2-암34호선 노선 축소에 따른 가각전제 변경
소로2-암37	소로2-암37	· 노선 축소 B = 8m L = 144 → 114m (감 30m)	· 종로2-암10호선 실효에 따른 연결체계 정비하기 위해 노선 축소
소로2-암38	소로2-암38	· 가각전제 변경 B = 8m, L = 103m	· 소로2-암37호선 노선 축소에 따른 가각전제 변경
소로2-암39	소로2-암39	· 노선 연장 B = 8m L = 184 → 186m (증 2m)	· 소로1-암4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노선 연장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암40	소로2-암40	· 노선 연장 B = 8m L = 194 → 197m (증 3m)	· 소로1-암4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노선 연장
소로2-암46	-	· 노선 폐지 B = 8m, L = 10m	· 완충녹지 폐지 및 공공보행통로 연장으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2-암47	소로2-암47	· 노선 연장 B = 8m L = 103 → 113m (증 10m)	· 중로1-암11호선 재결정에 따른 연결체계 정비하기 위해 노선 연장
소로2-암48	소로2-암48	·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B = 8m L = 145 → 193m (증 48m)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중로1-암11호선 재결정에 따른 연결체계 정비하기 위해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소로2-암49	소로2-암49	· 노선 축소 B = 8m L = 102 → 101m (감 1m)	· 광로3-1호선과 중복결정으로 인한 중복구간 노선 축소
-	소로3-암61	· 노선 신설 B = 4m, L = 243m	·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주변 지역 이격 및 보행공간 연결을 위해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암62	· 노선 신설 B = 4m, L = 4m	·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주변 지역 이격 및 보행공간 연결을 위해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있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	3,920	증) 371	4,291	-	
변경	29	암량1 노외주차장	암량을 암량리 182-1번지 일원	1,406	증) 371	1,777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기정	30	암량2 노외주차장	암량을 부적리 198번지 일원	1,042	-	1,042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기정	31	암량3 노외주차장	암량을 신대리 180번지 일원	1,472	-	1,472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암량1 노외주차장	· 주차장 위치 조정 및 확장 A = 1,406 → 1,777㎡ (증 371㎡)	· 국가지정유산구역과 주변지역 이격 및 방문자 및 주변 주거지역 주차공간을 위해 위치 조정 및 확장

다.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조서 (변경 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녹지	2개소	-	17,221	감) 7,635	9,586	-	
소계		완충녹지	-	-	8,085	감) 8,085	-	-	
폐지	163	대포1-2호선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포1-암11(부적리 169) ~중포1-암1A(암랑리 50)	8,085	감) 8,085	-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소계		경관녹지	2개소	-	9,136	증) 450	9,586	-	
변경	6	암랑1 경관녹지	경관녹지	암랑읍 암랑리 169번지 일원	2,866	증) 450	3,316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기정	7	암랑1 경관녹지	경관녹지	암랑읍 암랑리 170번지 일원	6,270	-	6,27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3	대포1-2호선변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A = 8,085m ²	· 암랑지구내 대포1-2호선 실효 후 도로연결체계를 위해 중포1-암11호선 재결정에 따른 대포변 완충녹지 폐지
6	암랑1 경관녹지	· 경관녹지 확장 A = 2,866 → 3,316m ² (증 450m ²)	· 소규모 녹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소유현황을 감안하여 점한 경관녹지로 관리하고자 시설확장

2) 공원 결정 조서 (변경 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공원	8개소	-	25,955	감) 119	25,836	-			
소개		근린공원	1개소	-	15,489	증) 156	15,645	-			
변경 17		암랑공원	근린공원	암랑읍 암랑리 179번지 일원	15,489	증) 156	15,645	경상북도고시 제1999-183호 (1999.8.3)	공원 확장		
소개		어린이공원	3개소	-	4,640	증) 29	4,669	-			
변경 98		암랑1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암랑읍 암랑리 129번지 일원	1,628	증) 29	1,657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공원 확장		
기정 99		암랑2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암랑읍 부적리 112번지 일원	1,500	-	1,50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기정 100		암랑3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암랑읍 암랑리 200번지 일원	1,512	-	1,512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소개		소공원	4개소		5,826	감) 304	5,522	-			
변경 21		암랑1 소공원	소공원	암랑읍 부적리 65-4번지 일원	1,134	감) 304	83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공원 축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2	암량2 소공원	소공원	암량을 부적리 214-1번지 일원	750	-	75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기정	23	암량3 소공원	소공원	암량을 신대리 181번지 일원	590	-	59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기정	24	암량4 소공원	소공원	암량을 암량리 171번지 일원	3,352	-	3,352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 경산시 고시 제2020-138호(암량공원 A = 24,993 → 15,489㎡ 감)9,504 미집행구간 실효)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7	암량공원	· 공원 확장 A = 15,489 → 15,645㎡ (증 156㎡)	· 소로1-암44, 소로3-암61, 소로3-암62호선 변경에 따른 공원 정형화
98	암량1 어린이공원	· 공원 확장 A = 1,628 → 1,657㎡ (증 29㎡)	· 중로2-암10호선 실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정형화
21	암량1 소공원	· 공원 축소 A = 1,134 → 830㎡ (감 304㎡)	· 광로3-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반영하여 소공원 증복구간 축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 조서 (변경 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학교	2개소	-	33,240 감)	7	33,233	-	-
변경	28	암량1 초등학교	초등학교	암량읍 암량리 169-2번지 일원	16,356 감)	7	16,349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기정	12	암량1 고등학교	고등학교	암량읍 암량리 164번지 일원	16,884	-	16,884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8	암량1 초등학교	· 학교 축소 A = 16,356 → 16,349㎡ (감 7㎡)	· 소로1-임37호신 변경에 따른 학교 면적 축소

마. 방재시설

1) 우수지 결정 조서 (변경 있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우수지	3개소	-	5,082	감) 2	5,080	-	
변경	11	암량1 우수지	저류시설	암량읍 부적리 65-4번지 일원	1,077	증) 103	1,18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우수지 확장
변경	12	암량2 우수지	저류시설	암량읍 부적리 119-8번지 일원	705	감) 105	60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우수지 축소
기정	13	암량3 우수지	저류시설	암량읍 암량리 125번지 일원	3,300	-	3,300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 (2013.12.30.)	

■ 유수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1	입량1 유수지	· 유수지 확장 A = 1,077 → 1,180㎡ (증 103㎡)	· 광로3-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반영하여 유수지 중복구간 축소 및 압량지구 내 대로1-2호선 실효 후 도로연결체계를 위해 중로1-암11호선 재결정에 유수지확장
12	입량2 유수지	· 유수지 축소 A = 705 → 600㎡ (감 105㎡)	· 광로3-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반영하여 유수지 중복구간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면 번호	면적 (㎡)		위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후	
-	6,867	16,043	-	110,525	129,181	· 대지분할가능선으로 분할 권장 · 필지교환 가능 · 점한 필지와 합필 가능
-	6,528	-	입량읍 부적리 74-3 일원	6,867	16,043	· DH03 (6,528㎡) · 도로 (1,203㎡) · 안충녹지 (1,445㎡)
계	6,528	-	입량읍 부적리	6,528	-	

도 번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	DH02	8,384	14,569	80-6번지 일원 암랑읍 부적리 60-1번지 일원	8,384	증) 6,185	14,569	· DH04 (4,264㎡) · 도로 (1,921㎡)
-	DH04	5,573	-	암랑읍 부적리 62-3번지 일원	5,573	감) 5,573	-	-
-	DH05	2,995	10,223	암랑읍 부적리 126-1번지 일원	2,995	증) 7,228	10,223	· DH06 (3,578㎡) · BH03 (1,713㎡) · 도로 (1,937㎡)
-	DH06	3,578	-	암랑읍 부적리 167-3번지 일원	3,578	감) 3,578	-	-
-	DH07	4,484	4,484	암랑읍 암랑리 202번지 일원	4,484	-	4,484	-
-	DH08	6,523	11,607	암랑읍 암랑리 218번지 일원	6,523	증) 5,084	11,607	· DH12 (3,886㎡) · 도로 (1,198㎡) · DH10 (401㎡) · DH11 (5,261㎡) · DH12 (150㎡) · 도로 (3,887㎡) · 주차장 (718㎡) · 공원 (1,030㎡)
-	DH09	12,369	23,816	암랑읍 암랑리 182-1번지 일원	12,369	증) 11,447	23,816	-
-	DH10	6,407	10,913	암랑읍 암랑리	6,407	증) 4,506	10,913	· DH09 (-401㎡)

도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확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				150번지 일원				· 도로 (2,382㎡) · 주차장 (200㎡) · 공원 (2,325㎡)
-	DH11	5,261	-	암랑읍 암랑리 182-2번지 일원	5,261	감) 5,261	-	-
-	DH12	4,192	-	암랑읍 암랑리 224번지 일원	4,192	감) 4,192	-	-
-	DH13	8,692	8,692	암랑읍 암랑리 257번지 일원	8,692	-	8,692	-
-	DH14	5,388	5,488	암랑읍 암랑리 281번지 일원	5,388	증) 100	5,488	· 도로 (100㎡)
-	DH15	9,715	9,777	암랑읍 암랑리 115번지 일원	9,715	증) 62	9,777	· 도로 (62㎡)
-	DH16	5,102	5,102	암랑읍 신대리 225번지 일원	5,102	-	5,102	-
-	DH17	5,309	5,309	암랑읍 신대리 200번지 일원	5,309	-	5,309	-
-	DH18	3,158	3,158	암랑읍 신대리 239-6번지 일원	3,158	-	3,158	-

※ 경상북도고시 제2013-574호-(2013.12.30) 고시 내용 중 착오로 인한 대지분할 가능성을 획지로 기입 오기시항 삭제

나. 블럭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 면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계				-	32,752	증) 6,112	38,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내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지형 및 기존 소유필지를 기준으로 획지구성 가능 · 공동개발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할 경우 도로(15%이상), 주차장(0.6%이상), 공원(수용인구 1인당 3㎡이상) 확보
-	BH01	15,461	15,668	암랑읍 부적리 112번지 일원	15,461	증) 207	15,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207㎡)
-	BH02	8,123	14,810	암랑읍 부적리 119번지 일원	8,123	증) 6,687	14,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04 (604㎡) · 도로 (3,144㎡) · 공원 (2,939㎡)
-	BH03	9,168	8,386	암랑읍 부적리 151번지 일원	9,168	감) 782	8,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05 (-1,713㎡) · 도로 (931㎡)

다. 중층 공동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76,070	증) 2,010	78,080	· 공동주택 개발 시 5,000㎡이상으로 분할 가능 · 가구 내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지형 및 기존 소유필지를 기준으로 획지 구성 가능
-	RH01	8,858	9,933	암랑읍 부적리 156-9번지 일원	8,858	증) 1,075	9,933	· 완충녹지 (1,075㎡)
-	RH02	8,780	9,723	암랑읍 부적리 180-1번지 일원	8,780	증) 943	9,723	· 완충녹지 (943㎡)
-	RH03	9,384	9,384	암랑읍 부적리 198번지 일원	9,384	-	9,384	-
-	RH04	8,922	8,922	암랑읍 부적리 180-1번지 일원	8,922	-	8,922	-
-	RH05	9,046	9,046	암랑읍 암랑리 243번지 일원	9,046	-	9,046	-
-	RH06	7,491	7,491	암랑읍 신대리 181번지 일원	7,491	-	7,491	-
-	RH07	11,286	11,278	암랑읍 신대리 179-1번지 일원	11,286	감) 8	11,278	· 도로 (-8㎡)
-	RH08	12,303	12,303	암랑읍 신대리 168-5번지 일원	12,303	-	12,303	-
계								

라. 고층 공동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 면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	171,076.4	증) 19,365	190,441.4	· 10,000㎡이상으로 분할 가능
	A01	51,595	67,785	압량읍 부적리 156-9번지 일원	51,595	증) 16,190	67,785	· 도로 (12,263㎡) · 완충녹지 (3,927㎡)
	A02	46,551	49,726	압량읍 부적리 180-1번지 일원	46,551	증) 3,175	49,726	· 도로 (2,874㎡) · 공원 (301㎡)
				소계	72,930.4	-	72,930.4	
	A03	72,930.4	72,930.4	압량읍 압량리 200번지 일원	32,080	-	32,080	-
				-02	40,850.4	-	40,850.4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있음)

도 면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6,414	증) 3,920	30,334	· 획지분할시 300㎡이상으로 분할 가능
-	NF01	1,981	1,981	암량읍 부적리 62-1번지 일원	1,981	-	1,981	-
-	NF02	2,025	2,025	암량읍 부적리 62-4번지 일원	2,025	-	2,025	-
-	NF03	1,634	2,179	암량읍 부적리 62-4번지 일원	1,634	증) 545	2,179	· 도로 (545㎡)
-	NF04	2,569	8,928	암량읍 부적리 56번지 일원	2,569	증) 6,359	8,928	· NF05 (2,984㎡) · 도로 (3,375㎡)
-	NF05	2,984	-	암량읍 부적리 59번지 일원	2,984	감) 2,984	-	-
-	NF06	8,957	8,957	암량읍 부적리 180-10번지 일원	8,957	-	8,957	-
-	NF07	6,264	6,264	암량읍 부적리 180-7번지 일원	6,264	-	6,264	-

바. 주차장용지 (변경 있음)

도 면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계			-	3,920	증) 371	4,291	· 획지분할 금지
29	P01	1,406	1,777	암랑읍 암랑리 182-1번지 일원	1,406	증) 371	1,777	· DH09 (-525㎡) · DH10 (-200㎡) · 도로 (91㎡) · 공원 (1,005㎡)
30	P02	1,042	1,406	암랑읍 부적리 198번지 일원	1,042	-	1,042	-
31	P03	1,472	1,472	암랑읍 신데리 180번지 일원	1,472	-	1,472	-

사. 학교용지 (변경 있음)

도 면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계			-	33,240	감) 7	33,233	· 획지분할 금지
28	S01	16,356	16,356	암랑읍 암랑리 169-2번지 일원	16,356	감) 7	16,349	· 도로 (-7㎡)
12	S02	16,884	16,884	암랑읍 암랑리 164번지 일원	16,884	-	16,88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DH 01~18	DH 01~02, DH05 DH 07~10, DH 13~18	용도	·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장용도	
			불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높이	기정	· 경산암량유적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변경	· 경산암량유적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건축물층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또는 규제 가능		
배치(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를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육외주차장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 이격될 수 있도록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p>형 태 장 (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주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7/10을 권장 ·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p>색 채 장 (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한계선	<p>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현황도로의 차량진출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폭원 4m의 건축한계선 계획(DH03, DH08, DH11, DH13~DH17) · 대로1-2호선변 주거환경 보호 및 수림대 조성을 위해 폭원10m의 건축한계선 계획(DH01~DH02)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현황도로의 차량진출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폭원 4m의 건축한계선 계획(DH01, DH08, DH9, DH13~DH17) · ※ DH15가구 내 건축한계선 일부분 폐지 ·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6.4~7.5m의 건축한계선 신설(DH05) · 광로3-1호선 변 완충녹지 실효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완충공간 10m의 건축한계선 계획(DH01)

나. 불럭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BH01~03	용 도	권 장 용	· 불럭형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 허 용	-
		진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기 정	· 경산압량유역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변 경	· 경산압량유역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건축물층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또는 규제 가능
배 치 (권 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를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면으로 옥외주차장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 이격될 수 있도록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형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주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7/10을 권장 ·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색 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로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1호선 변 완충녹지 실효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완충공간 0~4.6m의 건축한계선 계획(BH01) ·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위한 3m의 건축한계선 신설(BH02, BH03) · 국가지정문화유산 경관 보호를 위한 수림대 조성에 따른 2m 건축한계선 신설(BH02)

다. 중층 공동주택용지 (변경 있음)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RH 01~08	권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용적률 : 210%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이하
		배 치 장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를 권장

면 도 번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주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7/10을 권장 ·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색 채 (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색채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한계선	-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포3-1호선 변 완충녹지 실효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9~10m의 건축한계선 계획(RH01,RH02)

라. 고층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A01~A02 : 50% 이하 · A03 : 60% 이하	
		용적률		
A 01~03		높이	· A01~A02 : 25층 이하 · A03-01 : 33층 이하 · A03-02 : 29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280% 이하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은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완화적용 가능)
		배치 (권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를 권장	
		형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형태의 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6분의 1이하로 유도하며, 옥상 녹화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건축물의 호수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 6호 이내, 85㎡를 초과하는 경우 4호 이내로 권장 · 건축물 1동의 길이는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10층 이하 부분은 80m이하, 11층 이상 부분은 60m이하가 될 수 있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주거동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2개 이상의 색채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색채변화를 유도하고, 최상층부는 지붕과 동일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색채 권장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마. 근린생활시설 용지 (변경 있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NF 01~07	NF 01~04, 06, 07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경상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 60% 이하 기준용적률 : 210%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10층 이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를 권장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율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주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7/10을 권장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배 치 (권 장)				
			형 태 (권 장)				
			색 채 (권 장)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개방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폭원 2~10m의 건축한계선 계획 대로1-2호산변 수립대 조성을 위해 폭원 10m의 건축한계선 계획 (NF03, NF05) 시각적 개방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폭원 2~10m의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바. 주차장 용지 (변경 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9 30 31	P 01~03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장 법령에 따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 계 율	· 60% 이하, 20% 이하	
		용 적 륜	· P01 : 180% 이하 · P02, 03 : 210% 이하	
		높 이	기 정	· 경산암량유적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변 경	· 경산암량유적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건축물층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또는 규제 가능
색 채 (권 장)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로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사. 학교용지 (변경 있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2 28	S 01~02	지정용도	·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높 이	· 경산암량유역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경산암량유역 제1연병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의 건축물층수는 1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또는 규제 가능
색 채 (권 장)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유도할 수 있는 색채 권장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있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획내용
폐지	-	대로1-2	수림대	· 대로1-2호선변 폭 10m의 수림대 설치
기정	-	전 지역	공개공지	· 공개공지 지정 대상건축물은 지침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조성
변경	-	A01, A03	측면이격 공지	· 보행자의 보행거리 단축을 위해 A01(1개소), A03(2개소)에 폭원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아파트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위치 조정 가능)
신설	-	BH02 BH03	공공보행 통로	· 학교용지 통학로 조성을 하기 위해 소로1-암41호선 우측(BH03, BH02) 및 소로1-암37호선 우측(BH02)으로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보 3m 지정
신설	-	BH02	수림대	· 보행자도로인 소로3-암61 및 소로3-암62호선 서측(BH02)에 폭 2m 수림대 설치

나. 교통처리계획 (변경 있음)

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폐지	-	대로1-2호선변	· 대로와 접하는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 참조
기정	-	A03 가구 교차로 주변	· 교차로에서 30m 구간에 대해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 참조

- 기타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심의 받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다
- 대로1-2호선은 실효되고 중로1-암11호선을 재결정됨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폐지

다. 인센티브 계획 (변경 없음)

- 압량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2조(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구분	적 용 대 상	적 용 비 율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1+1.5×(권장용도 연면적 / 총연면적×0.3)]
대지내 공지	관련법상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 및 수림대 등 조성시	기준용적률×[1+1.5×(공개공지 면적 - 설치기준 면적 / 대지면적)]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를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시	기준용적률×[1+1.5×(제공면적 / 대지면적)]
기부채납	공공의 이용에 제공 하는 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무상 기부채납 시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라. 가설건축물 검토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를 적용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 (신설)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를 적용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등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3)로 문의하십시오.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6-1775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0-3 일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민간공원(꽃동산공원) 구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6. 11.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중로 1-146 • 1-10, 대로 3-7 • 3-8)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1-146 : 14,830.0㎡

- 중로1-10 : 191.0㎡
- 대로3-7 : 3,397.5㎡
- 대로3-8 : 8,594.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시행자 1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 명 : 구미시장 (공원녹지과)

나. 시행자 2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62-4(봉곡동)
- 성 명 : 지엠파크 주식회사 공동대표 이상화, 운영수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8년 12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일시 : 2026. 06. 11. ~ 2026. 06. 24. / 14일간
- 열람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054-480-5562)
- 의견제출
 - 방문제출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 우편 :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고아읍 문성리 513) 3층, 공원녹지과
 - 팩스 : 054-480-5559(팩스 전송 후 054-480-5562로 유선 연락)

※ 의견서는 구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7. 실시계획인가 도서 : 열람장소 내 비치 (계재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도로(중로1-146)

연번	위 치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합계			16,642.0	14,830.0			
1	고아읍	원호리	산39-4	429.0	42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고아읍	원호리	산40-9	1,751.0	1,75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	고아읍	원호리	산40-7	2,612.0	2,61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고아읍	원호리	산40-4	423.0	42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고아읍	원호리	산40-10	392.0	39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	고아읍	원호리	산41-2	2,555.0	2,55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고아읍	원호리	산42-13	4,061.0	4,06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고아읍	원호리	산102	449.0	21.0	국(농림수산부)		기정
						국(기획재정부)		변경

연번	위 치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9	고아읍	원호리	산103	도	198.0	71.0	국(농림수산부)		기정
10	고아읍	원호리	산104	구	177.0	124.0	국(기획재정부)		변경
							국(농림수산부)		기정
11	고아읍	원호리	산105	구	496.0	245.0	국(기획재정부)		변경
							국(농림수산부)		기정
12	고아읍	원호리	산106	도	660.0	104.0	국(건설교통부)		기정
							국(기획재정부)		변경
13	고아읍	원호리	392-7	전	2.0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4	고아읍	원호리	417-2	전	587.0	58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5	고아읍	원호리	418-1	전	537.0	5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6	고아읍	원호리	418-3	전	370.0	37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연번	위 치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17	고아읍	원호리	421	전	664.0	31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8	고아읍	원호리	522	도	45.0	1.0	국(건설교통부)		기정
							국(기획재정부)		
19	고아읍	도량동	산46-2	임	234.0	23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나. 도로(종로1-10)

연번	위 치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합계				10,074.0	191.0			
1		도량동	7-3	도	5,756.0	92.0	구미시		
2		도량동	6-4	답	85.0	60.0	구미시		
3		도량동	6-2	답	10.0	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도량동	7-2	답	58.0	7.0	구미시		
5		도량동	816-37	구	4,165.0	26.0	국(농림축산식품부)		

다. 도로(대로3-7)

연번	위 치			지목	대장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합계				28,154.9	3,176.0	3,397.5			
1	고아읍	원호리	474	공	2,858.9	491.0	491.0	구미시		
2	고아읍	원호리	463	도	1,563.2	13.0	13.0	구미시		
3	고아읍	원호리	470	도	1,995.5	12.0	12.0	구미시		
4	고아읍	원호리	466	도	13,620.2	935.0	935.0	구미시		
5	고아읍	원호리	471	공	4,067.9	795.0	795.0	구미시		
6		도량동	862-1	도	3,366.7	371.0	469.0	구미시		
7		도량동	862	공	682.5	559.0	682.5	구미시		

라. 도로 (대도3-8)

연번	위 치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합계			71,629.8	8,594.0			
1		도량동	구	4,165.0	52.0	국(농림축산식품부)		
2		도량동	임	42.0	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		도량동	도	537.0	5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도량동	도	774.0	131.0	구미시		
5	고아읍	원호리	임	63.0	1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	고아읍	원호리	임	607.0	30.0	구미시		
7	고아읍	원호리	임	201.0	10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고아읍	원호리	도	193.0	19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고아읍	원호리	전	116.0	11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연번	위 치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10	고아읍	원호리	산102	구	449.0	382.0	국(농림수산부)		기정
11	고아읍	원호리	산42-10	임	399.0	39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12	고아읍	원호리	산42-12	임	278.0	27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고아읍	원호리	401	도	5,880.0	1,161.0	구미시		
14	고아읍	원호리	472	공	4,442.4	335.0	구미시		
15	고아읍	원호리	467	도	4,770.0	101.0	구미시		
16	고아읍	원호리	473	공	1,812.1	915.0	구미시		
17	고아읍	원호리	407	도	4,224.0	473.0	구미시		
18	고아읍	원호리	466	도	13,620.2	181.0	구미시		
19	고아읍	원호리	518-3	구	406.0	85.0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위 치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 유 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20	고아읍	원호리	474	공	2,858.9	989.0	구미시		
21	고아읍	원호리	438	도	4,666.0	1,197.0	구미시		
22	고아읍	원호리	462	도	17,310.9	180.0	구미시		
23	고아읍	원호리	475	공	1,735.3	545.0	구미시		
24	고아읍	원호리	491-71	답	1,513.0	101.0	경상북도		
25	고아읍	원호리	491-69	제	567.0	53.0	국(건설교통부)		